

2023. 12.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연구

-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 진해장애인인권센터
-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연구

2023. 12.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연구진

- 연구원 이동석(대구대학교 장애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나영(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총괄기획본부장)
김평화(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박사과정)
민경선(진해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옥란(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박사과정)
장정은(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오민혜(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국장)
이민지(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팀장)
박성화(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주임)
임소정(진해장애인인권센터 팀장)
김다경(진해장애인인권센터 주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내용	3
2) 연구 방법	4
3. 연구 추진체계	5
II. 장애인식개선의 개념 및 필요성	6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해	6
1) 인식의 개념	6
2) 장애의 개념	8
3)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인식제고	10
4)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	13
2. 국내인식개선 관련 문헌 고찰	14
1) 일반인식개선 관련 연구	14
2)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연구	16
3. 해외의 장애인식개선교육(awareness raising) 관련 내용	21
1) 일본	22
2) 미국	23
3) 영국	25
4) 호주	26
5) 캐나다	28
III.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분석 결과	30
1. 분석 대상 및 틀	30
1) 분석대상	30
2) 분석 틀	30
3) 측정 방법	33
2. 분석 결과	36

1)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표준 강의안	36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표준 강의안	38
3) 한국장애인재단: 성인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안	39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교육 표준 강의안	40
3. 함의	42

IV. 초점집단면접 조사결과 44

1. 조사의 개요	44
1) 연구참여자	44
2) 면접 내용과 분석방법	45
2.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 심층 면접 분석 결과	45
1) 인식개선교육의 현재	46
2) 교육 목표의 가치를 방해하는 요소	50
3) 바람직한 방향	55
4) 또다른 인식개선의 도구, 미디어의 변화	63
3.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심층 면접 분석 결과	65
1) 인식개선교육의 현실	66
2) 교육을 어렵게 하는 구성 요소	71
3) 올바른 교육의 변화와 방향	78
4. 함의	83
1) 교육 내용의 변화	85
2) 교육의 품질관리 강화	86

V.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88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향성 및 목표	89
1) 방향성	85
2) 목표	91
2. 가이드라인 접근 원칙 및 내용	91
1) 가이드라인 접근 원칙	91
2)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	94
3. 제언	96

참고문헌 10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6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성희 외, 2020). 이에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애 인식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2006년 제정되고, 우리나라도 국회비준을 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 인식제고의 내용¹⁾에는 국가는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이동석 외, 2019).

올해는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된 지 8년째 되는 시점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교육 내용과 방법은 장애패러다임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편견을 바로 잡아주어 긍정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다름을 인정

1) 제8조(인식 제고) 내용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하는 태도 형성의 기회를 제공(이상애 외, 2004)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은 법률 소개, 장애 유형 설명, 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 차별 시 처벌 조항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등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교육에 머물고 있어 변화하는 장애개념과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취지와 목적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의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의료적인 측면과 중재·치료 모델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고(김성애, 2014; 이대식, 김수연, 2013), 장애인의 복합적, 총체적 경험에 대해 관찰자 또는 제3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한계(신현기, 2014; 우충완, 2015)와 장애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정상성(normalcy)과 비장애(성)(able-bodiedness)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우충완, 2015)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러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해소와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편견을 지속해서 재생산해 내는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없는 장애 인권 증진의 강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실은 장애인을 분리하는 법과 제도, 정책이 난무하는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식과 행동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권침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거나, 다른 형태의 편견과 차별, 인권침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이동석 외, 2019).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향,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폭적인 수정과 혁신적인 관점에 기반한 교육 내용 적용이 필요하다. 최근 장애와 장애인을 둘러싼 담론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이 있다. 장애학은 1960~7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장애권리운동에 영향을 받아 조성된 학문 분야로, 장애를 결함 또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중재, 치료, 제거 등을 통해 장애인을 정상화(normalization) 또는 규범화(normativity)를 시도하는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 of disability)과 실천의 기본 전제와 가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김병하, 2015; 조한진, 2011; Dacis, 2002, Smart, 2000). 장애학은 비장애 중심의 사회적 담론과 물리적 환경 등이 장애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과 장애를 성별, 인종, 계급, 종교, 성적 지향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체성(identity)과 문화로 수용하는 소수자 모델(minority model of disability)을 지향한다(Berger, 2013; Garland-Thomson, 1997; Linton, 1998; Woo, 2012). 또한 장애학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당연시 여겨온 장애와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신념, 과정과 실천의 네트워크, 즉 비장애 중심주의

(ableism)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Siebers, 2008).

이에 본 연구는 다양성에 앞서 인간존재 가치의 기본에서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장애인식개선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의 역할로서 기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에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개인적 관념론적 입장을 사회적 관념론으로 수정하고, 비장애중심주의 즉, 능력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모델에 바탕을 두는 장애학 관점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원칙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천 분야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체계를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연구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줄어들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보고서의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장애학 관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고찰하였다. 먼저, 장애가 무엇인지 인식(awareness)하는 행위 속에 담긴 인식의 개념과 장애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정리를 통해 장애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제고 조항 indicator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를 확인하고 국내외 일반인식개선관련 연구 및 장애인식개선관련 연구 현황검토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 방향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및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목표와 UN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제고 조항 indicator를 범주화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육안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육 방향·교육 효과·강사 역량 등 장애학 관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식개선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D)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견들을 연구에 담고자 하였다.

넷째, 장애학 관점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을 장애학 관점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였고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 표준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올바른 장애 개념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 장애인의 기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문헌 검토,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안 분석, 초점집단인터뷰(FGD)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달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각 챕터별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연구 전반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과제의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식’ 과 ‘제고’ 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인식 제고, 인식개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CRPD 제8조(awareness raising)조항 indicator 분석과 국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 내용 분석, 해외의 장애인식개선교육(awareness raising)제도 및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반적인 흐름 및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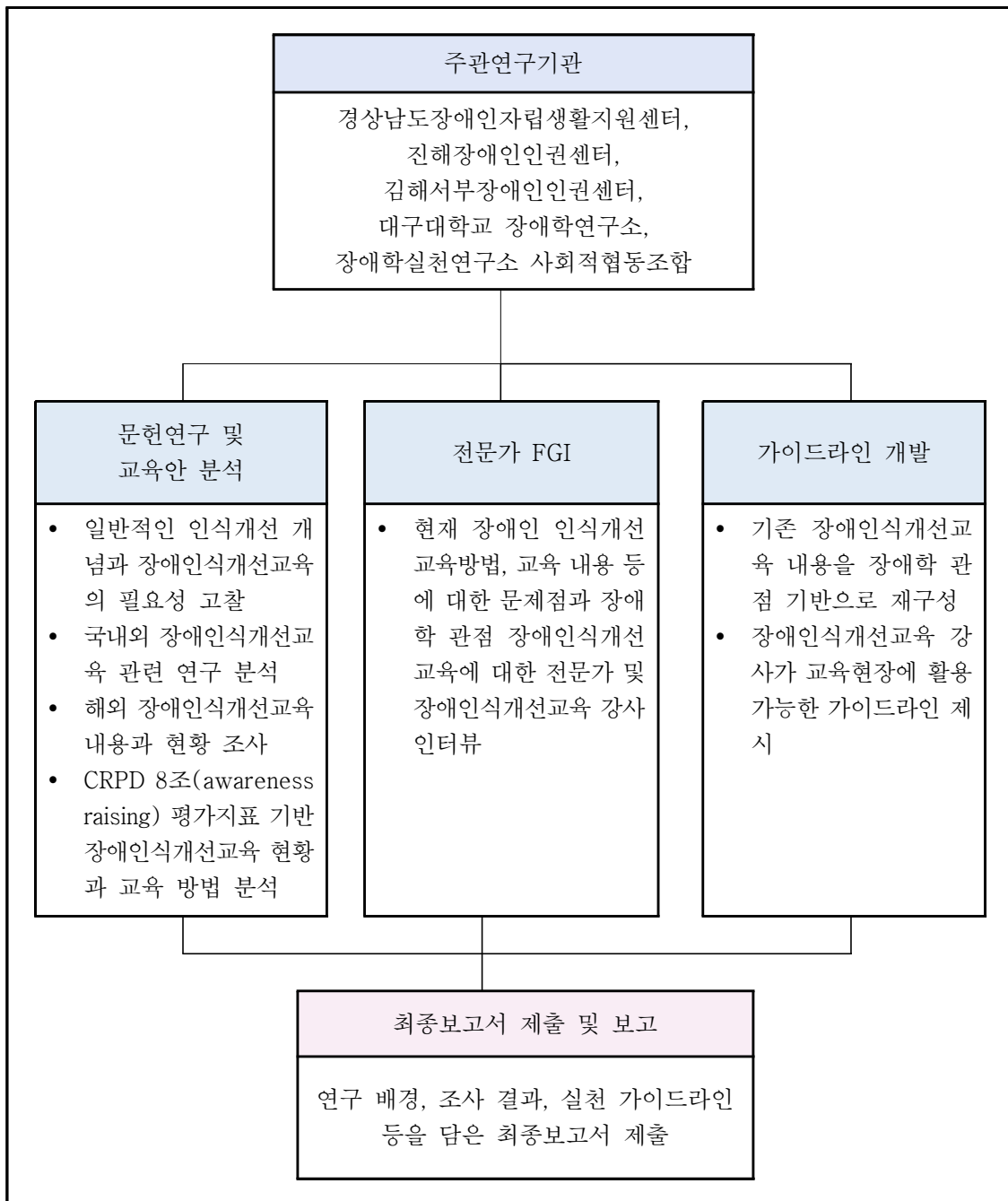
둘째,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학 관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공공영역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재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을 장애학 관점 분석틀로 분석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전문가와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D)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 국내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합의가 반영된 반구조화 설문지를 활용하여 장애학 관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교육 과정,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그룹은 인식개선교육 전문가와 강사, 두 그룹으로 사회적 모델에 바탕을 두는 장애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목표지향적인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었다.

넷째, 월 1~2회의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각 챕터별 내용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연구 내용과 방법, 조사 결과와 합의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연구진들이 합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3. 연구 추진체계



II. 장애인식개선의 개념 및 필요성

1.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이해

1) 인식의 개념

우리가 ‘장애 인식’ 개념을 고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장애’가 무엇인지 ‘인식’ 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개인의 왜곡된 사고와 사회의 차별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험의 영향으로 형성된 대인 신념에 의해 장애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을 거부, 동정, 시혜 등의 대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역사는 인간 역사와 함께 모든 인간 사회에 항상 존재해 왔다(전지혜, 2017).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존재이며 심지어 열등하게 다른 존재라 인식되어져 수용시설에 수용되거나 우생학을 적용하여 노골적으로 소멸되어졌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어 존재하고 있고 장애인이 된다는 것, 또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유나 동기와 상관 없이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가치 없는 존재’ 등으로 장애인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거나 사회가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개념을 확산시키고 있다(조한진 외, 2014).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권리협약」 인식제고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정책으로 도입하였고,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등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의 관점에서 근로에서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개념을 논하기에 앞서 ‘인식’을 ‘개선하다’라는 행위 속에 담긴 의미는 이미 ‘인식’ 자체를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에서 비롯된 편견으로 바라보고 ‘장애’를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동일 외, 2018). 또한 권선진(2006)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항상 강조되는 영역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장애에 대한 고착된 시선은 물론, 사회적·역사적으로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선입견이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재생산해 내고 때문이다(정정희,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를 인식한다고 할 때, ‘인식(awareness)’의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간 비교를 통해 ‘인식(awareness)’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인식 개선(awareness raising)’이 가진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에 따르면 ‘인식(awareness)’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이고 ‘지각(realization)’은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을 말하며,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심리학 관점에서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 또는 그런 작용, 그 작용의 결과로 지각체가 형성된다고 한다. ‘의식(consciousness)’은 사람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또는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감정, 견해나 사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Oxford Learner’s Dictionarie에 ‘인식(awareness)’과 유사한 단어들을 검색하면 ‘인식(awareness)’은 the fact of knowing about or understanding sth (어떤 것을 알거나 이해함)로 ‘지식(knowledge)’은 특정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the state of knowing about a particular fact or situa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식(consciousness)’은 무엇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 한 사람이나 집단의 생각이나 견해(the state of being aware of sth; the ideas and opinions of a person or group)로 ‘깨달음(realization)’은 깨달음, 자각, 인식(the process of becoming aware of sth)으로, ‘지각(perception)’은 특히 감각을 통해 무엇을 알아챌; 자신이 어떤 것을 이해하는 방식의 결과로 갖게 된 의견이나 생각(the way that you notice things, especially with the senses; the opinion or idea that you have of sth as a result of the way in which you understand it)으로 정리되어 있다.

정리하면, ‘인식(awareness)’은 사물의 식별, 기억 및 사고의 총체적 작용이자 나아가 객관적 실재가 인간의 의식에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인식(disability awareness)’은 장애에 대한 감정 또는 태도가 아닌 인지의 영역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육을 통해 ‘장애인식(disability awareness)’의 형질을 바꾸는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인식(awareness)’은 인간 경험의 속성에 관한 일련의 핵심 가정과 개념으로 이루어져 인간이 만든 이해 도구이자 행동지침이기에 우리의 세계를 정의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태도(attitude)와 행동(action)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종정, 2016).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awareness)’ 변화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장애개념을 정

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장애의 개념

지금까지 ‘장애’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앞으로 ‘장애’가 시대적 요청과 맞물려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을 검토하는 것(이종정, 2016)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향설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장애를 인식하는 틀은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혹은 제도적으로 장애인식을 접근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화와 장애인의 범주는 그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반영한다(정정희, 2022). 장애란 무엇인가? 우선, 장애에 대한 어떠한 담론과 논의를 시작할 때 이미 장애를 중립적으로 표현할 용어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장애란 무엇인가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기초학문적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당장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서비스를 고안하고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왔기 때문이다(박승희, 2004).

우리 사회가 장애인식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장애의 이론적 틀이 필요하며 더욱이 이론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게 하고 세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틀이나 관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조한진, 2023).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해석하는 관점을 사회적 문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인한 장애 문제의 해결을 사회적 차원 즉 사회적 인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장애학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아 치료하거나 제거되어야 할 결함으로 정의 내린 기존 의료적 관점을 비판하며 장애는 사회적 불평등의 산물이며 사회·건축 환경의 의미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조한진 외, 2023).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가? 다른가? 2)이 질문은 장애를 설명하는데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단순한 이분법으로 장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대에 따라 어느 정도 경향성은 존재하였다. 전근대 시대에 장애는 다름의 하나였다. 신의 징벌이건, 도덕적 죄의 벌이건, 신의 은총이건 모두 보편적인 인간과는 다른 존재였다. 이후 근대 초기에는 의료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근대화 시기의 추세는 차이를 없애고 같음을 생성하는 것이었다. 억압, 소수자 지위, 시민권 등과 같은 개념의 발전에 따라 장애에 관한 현대 서구의 논쟁들은 동일함 또는 유사함으로 인식

2) 그린비 출판사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 편집자 추천글 인용

되는 평등이 바람직하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발전해왔다. 세상에는 동일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게 된다.

탈근대화 시기는 분열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칭송해왔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적 특이성을 주장했고, 또한 장애인으로서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주장해왔다. 그들이 느끼는 다름이라는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아야 할 억압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또한 장애인으로서 살면서 특이하게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농문화, 장애문화, 또는 장애 자부심(disability pride)을 말하면서 장애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을 한다. 심지어 농인은 다른 언어 사용에 따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과도 다르다고 말을 한다. 발달장애도 비발달장애인과는 다른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논리로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말한다. 다름의 개념은 장애를 숨기거나 노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 또는 칭송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칭송이 사회적 불리, 빈곤, 장애, 인종, 그리고 계급과 관련해서 보면 공허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기 시작했다.

장애학은 장애인을 같거나 다르다고 일괄적으로 보지 않고, 장애를 같거나 또는 다르다고 보는 접근법들을 섞어오고 있다. 인권관점에서 보면 같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정체성의 발달과정을 통하여 장애화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다름이 당연한 원칙이 된다. 이러한 애매한 이중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회과학에 바탕을 둔 장애학은 ‘같음으로서의 장애’ 담론을 더욱 강화시키려 할 것이다. 반면 인문학에 바탕을 둔 장애학은 어떻게 장애가 다름이라는 이미지로써 표현되어왔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할 것이다.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 (패트릭 데블리저 외, 2012) 는 장애학의 ‘같음으로서의 장애’ 에 대한 발전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장애인을 같거나 또는 다르게 구분하거나 범주화하는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접근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 장애에 관한 ‘비슷하면서도 다른(similar and different)’ 시각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름을 존중하는 장애 문화 발전단계에 필수적이기는 하더라도, 현재 단계인 ‘비슷하지만 다른(similar but different)’ 단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장애를 ‘비슷하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시대에 우리는 장애를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장애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존재할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3)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인식제고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고, 2009년 1월부터 발효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협약은 전문 25개 사항과 본문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접근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선, 의료적 치료, 사회적 보호의 ‘대상(objects)’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주체(subjects)’이어야 한다(이동석 외, 201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CRPD의 50개 조항 중 제3조에서는 협약의 일반 원칙 8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 ‘비차별’,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보호받는 신분에서 적극적 사회성원으로, 편견과 차별의 대상에서 평등과 반차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변용찬 외, 2006).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 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편견의 제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여러 유형의 차별,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인격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정희, 2020). 제8조(인식제고) 제1항에서는 전반적인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2항에서는 이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CRPD 제8조 인식 제고 조항 indicator는 인식제고 속성을 첫째, 고정관념과 유해한 관행에 대한 저항과 둘째,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셋째, 장애인에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로 나누고 사회 구조에서부터 프로세스, 결과에 이르기까지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표 1> 과 같다. 지표의 활용 방법은 예를 들어 인식제고의 세 가지 속성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8.1 법률 및 정책에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대한 조항확인과 8.2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장애인식제고 전략 혹은 계획 여부와 8.3 대중매체 및 언론 매체를 장려하기 위한 미디어 규제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 여부이다. 8.6 인권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형사적 제재를 포함하고 다양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키는 구조적 지표는 인식제고의 세 가지 속성 중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장애인에 기여에 해당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CRPD 제8조 인식제고 indicator는 사회 전반에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며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어 인식개선관련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식제고에 대한 평가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표 1> 제8조 인식 제고 조항 indicator

	고정관념과 유해한 관행에 대한 저항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에 기여
구조	8.1 법률 및 정책에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대한 조항 확인		
	8.2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장애인식제고 전략 혹은 계획 여부		하기 위
	8.3 대중 매체 및 언론 매체를 장려하기 위한 미디어 규제 당국의 구체적 여부		인 계획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직장 내 인사 절차에 대한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지침 제공 여부		
	언론인을 위하 장애인 관련 보도 가이드 라인		

	정책 및 제도의 설계, 개발 및 모니터링에 있어 장애인을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여부	
	8.4 증오 범죄, 혐오 발언 및 유해한 관행을 다루는 법적 조치 제정과 장애인의 권리 포함 여부 8.5 경멸적 언어 및 행동의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의 제정 여부	8.6 인권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형사적 제재를 포함하고 다양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키기
프로세스	8.7 장애인의 권리와 그 기여에 대한 멀티미디어 인식 제고 활동의 수와 유형, 기간 및 대상 그룹별로 세분화하여 표시 8.8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아웃리치 활동의 수와 유형 CRPD 선택의정서 및 국가 법률 체제에 따른 권리를 알리는 활동의 유형 및 지리적으로 세분화된 활동 8.9 고정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에 저항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알리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 수 8.10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포용과 인권 존중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콘텐츠의 존재 여부, 언론/커뮤니케이션을 생산하는 학교 및 대학의 커리큘럼에 성의 다양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8.11 장애인에 대한 보도 윤리 강령과 같은 서면 정책을 채택한 공공 및 민간 미디어 기업의 수와 비율 8.12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사회 전반 인식 제고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조직을 포함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과정 8.13 장애인 재현과 관련하여 접수된 신고 사항 중 조사 및 판결이 이루어진 비율, 신고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관련 담당자가 이를 준수한 비율을 각 매커니즘 유형별로 구분하여 표시	
	8.14 사법, 행정 및 법 집행자 중 장애인 혐오 범죄 및 유해한 관행과 장애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는 교육을 받는 비율 8.15 신고, 조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증오 범죄 및 혐오발언 사건의 수와 비율(해당되는 경우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장애별로 구분) 8.16 신고한 유해 행위 사건 중 기소된 비율과 유죄 판결로 이어진 비율을 피해자의 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로 구분한 비율	8.17 장애인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비율(일반 프로그램 또는 장애영역별 프로그램별로 구분)
	8.18 지난 12개월 동안 국제 인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을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하여 표시 8.19 성별, 연령, 장애, 공/사립, 초등/중등/고등/직업별 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괴롭힘, 체벌, 폭력, 성차별 및 학대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유네스코 지표 기준)	
결과	8.20 일반 인구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	8.21 미디어에서 장애인으로 등장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을 장애 유형별로 구분

4)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있다. 이는 장애인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제약 혹은 제한이라는 장애 개념의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사회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장애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의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은 현재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정책을 시행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장애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의 범위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역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양세희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의 ‘장애 개념’에 대한 인식, 인지(awareness) 교육을 통해 바꾸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은 CRPD 제8조 인식 제고 지표의 속성을 반영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전환, 인권 존중과 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무인식은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비슷하면서도 다른(similar and different)’ 장애 개념은 동등한 권력관계의 설명을 위해서는 법 앞의 평등과 자기결정권 존중, 평등권 등을 강조하고, 수평적 다름을 위해서는 장애를 특성의 하나로 설명하고 창피하거나 고쳐야 할 것이 아닌 자랑스러울(pride) 수 있는,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개념도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장애인식개선교육 개념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생 특성에 맞추어 강사들은 교육 내용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진행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해야만 체계적인 교육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표는 첫째,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이며 둘째,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넷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 조성 등이 있을 수 있다(이동석 외, 2019). 위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similar and different)’ 장애 개념 설명과 함께 CRPD 제8조 인식제고에 대한 속성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내 인식개선 관련 문헌 고찰

1) 일반 인식개선 관련 연구

장애영역 외의 인식개선관련 연구들은 어떤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식개선(awareness raising)’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구대학교 창과도서관 전자도서관에 등록된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8월) 자료 중 ‘인식개선’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는 학술저널 1,793개, 학위논문 620개, 회의자료 42개, 보고서 37개, 매거진 7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술저널과 학위논문의 인식개선 관련 연구는 장애인식개선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다음으로 다문화, 노인, 이민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인식개선 일반 문헌 검토

구분	연구정보	내 용
다문화	유득규(2023).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등교육 모델”. 한국과 국제사회 7권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중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모델을 제시 - 제시한 교육 모델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초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는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주민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가치를 이루기 위해 교실 권력이 교사

		<p>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교실을 배치하였다. 수업은 동기 유발-주제 접근-주제 심화-실천으로 구성</p>
	<p>모아라(2023).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방향 고찰”. 복지과 문화다양성 연구.</p>	<p>-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한국 다문화 사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p> <p>- 연구결과는 첫째, 고정관념 및 편견으로부터의 인식전환, 둘째, 대중매체에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내용 전달, 셋째, 교육을 통한 효과 기대, 넷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다섯째,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 정착으로 나타남</p>
	<p>김태연 외(2021)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다누리 배움터’의 유아용 다문화인식개선 콘텐츠 분석”. 인문사회 21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p>	<p>- 공공기관에서의 유아 대상의 다양한 다문화교육 콘텐츠 활성을 목적으로,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내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다누리 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유아용 자료인 ‘유아용 다문화인식 온라인 콘텐츠’의 콘텐츠 구성과 다문화 감수성 발달 내용을 분석함</p> <p>- 분석 결과 콘텐츠 구성은 유아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구성으로, 제공되는 활동을 통해 좀 더 쉽게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 놀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부색과 머리색이 달라도 친구가 되며, 인형극놀이로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므로 통합적인 다문화 감수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p>
노인	<p>김선진 외(2023) “국내 치매인식 개선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지.</p>	<p>- 국내에서 진행된 치매인식 개선 중재프로그램 연구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프로그램 분석 및 치매인식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p> <p>- 치매인식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치매인식을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에게 치매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제시함</p>
	<p>장세철 외(2020), “치매인식개선에 관한 연구 -치매용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p>	<p>- 치매에 대한 인식을 목표로 일본의 치매대체 용어 검토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치매인식개선의 정책안에 대체용어의 탐구를 위한 연구로 인지증이란 용어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일본의 기본연구자료를 통해 한국 내의 치매대체 용어의 탐구과 일본의 정책적 흐름을 정리 치매노인의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연구로 정책적 제안을 제시</p>
이민자	<p>임동진 외(2020).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p>	<p>-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p>

국내 인식개선 관련 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내편견과 차별로 인해 구조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교육모델 제시와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등이 주 내용이었다. 다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에는 비판적다문화주의에 기반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식개선 교육 모델을 제시한 연구와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모색한 연구, 유아 대상의 다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내용 분석 연구가 있었다. 노인을 주제로 한 연구에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적용 연구와 치매대체 용어 검토와 치매 노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를 주제로 한 연구는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내 연구들 중 특히 다문화를 주제로 한 인식개선연구는 본 연구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지향점들과 유사했다. 다문화 관련 연구들은 이주민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사회구조적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었는데 실천 방법으로 교실 권력이 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교실 내 배치와 동기유발에 대한 교육방법이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환영하고 차별과 편견을 금지하는 범애적 접근방식의 다문화교육은 일시적 혹은 표면적으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불평등과 차별과 편견이 일어나는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며, 결국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온 문화에 대해서 차이, 차별과 편견 금지 등 현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만이 차별과 편견이 일어나는 원인과 구조에 관한 접근을 경시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주민의 사회구조적 권력관계 변화 추구, 차별과 편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바라보는 관점은 장애학의 권력관계에서 억압받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 해결은 사회적 차원 즉 사회적 인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인식개선의 방향을 고정관념 및 편견으로부터의 인식전환, 대중매체에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내용 전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문화정책 제언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인식 전환에 필요한 장애 개념인 동등한 인권의 주체와 수평적 다름에 대한 내용과도 연관된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연구

장애인식개선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장애 개념에 대한 설명과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인식 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몇몇 연구는 장애학 관점을 적용한 장애이해교육의 필요성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를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로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양성 존중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언급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장애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를 통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는 것과 역경을 딛고 희망적인 삶을 사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면에서는 아쉬움이 컸다.

국내 장애인식개선 관련 연구들은 이동석 외(2019)의 연구에서 장애인식개선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 사용한 범주 중 첫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와 둘째,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 셋째,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로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그 내용은 <표 3> 와 같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목표인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와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표 3>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연구

구분	연구정보	내 용
제도적 측면 연구	남용현 외(201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국내외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변민수 외(2010). 『사업주의 장애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사업주에 따라 차별화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공단 수행 사업주 지원제도 및 서비스의 홍보 장치 필요 그리고 수요자 위주의 찾아가는 서비스 정기화 등과 같은 정책 제언
	최용선(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가 관련 법률에 도입된 경과와 도입 이후의 제도개선 노력 및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타법사례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
	이혜경 외(2017)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관 간 수준차이를 없애고 모든 교육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제언
	김경란 외(2022).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p>양세희(2022).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장애개념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논문.</p>	<p>-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법률상 장애 및 장애인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정책제시</p>
	<p>김정아 외(2006). “장애이해교육 내용을 삽입한 교과 수업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p> <p>권원영(1998). “특별한 친구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p>	<p>- 장애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과 더불어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교육 활동으로 장애를 설명하는 비디오, 도서, 강연들을 통한 정보제공, 모의 장애체험, 집단 토의, 장애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 등의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다각적인 노력이라고 함</p>
	<p>양옥승(2008). 이론적 탐구분야로서의 유아교육과정 이해(II). 열린유아교육연구.</p>	<p>- 장애이해교육이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개념 지음</p>
<p>프로 그램 내용, 방향성 제시 연구</p>	<p>이상애 외(2004). 장애이해 교육활동을 통한 일반유아의 장애 인식 및 태도 변화. 유아특수교육연구.</p>	<p>- 장애이해교육이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사이에 긍정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역경을 딛고 희망적인 삶을 사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임을 말하고 있음</p>
	<p>최병민 (2005). 초등학교 도덕과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장애이해교육 내용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p>	<p>- 장애이해교육이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 생활 속에서 돕는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유명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장치에 대한 지도, 장애 체험 활동, 집단토의 등의 장애이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육활동을 말함</p>
	<p>이대식 외(2013) “장애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교육논총』 .</p>	<p>-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델파이 방법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을 제시</p>
	<p>남용현 외(201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선방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p>	<p>- 고용현장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없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제언</p>
	<p>이혜경 외(2017)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양</p>	<p>-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 종사자로 묶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p>

	성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육교재, 어린이집 보모에서 대학교 교직원에 이르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하나로 묶어 이들을 위한 교육교재, 중고등학생용 교육교재, 초등학생용 교육교재 개발
	김동일 외(2018).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 로드맵 제시, 인식개선교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목표로 교육의무 대상 기관 확대, 기관별 분산된 인식개선 관련 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교육기관 설립, 콘텐츠 발굴 및 보급,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을 통한 자격제 단계적 전환 실시를 제시함
	김홍원(2022).“메타버스를 활용한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 필요성에 대한 탐구”.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이종남·한상미. 2018.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재활복지』.	-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장애수용태도나 인식변화에서 범위를 넓혀 장애 인권교육,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과 다름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
	김성진. 2015. “융합적 장애인식 교육 설계를 위한 초·중·고등 학생의 장애인 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장애인식 교육 참여 경험집단이 미참여 경험집단에 비해 장애편견은 낮게 나타나고, 관심과 배려, 장애 친구 수용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줌
	최윤영 외(2009). 고용주의 장애인고용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2회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사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인식 등에 대한 연구, 장애 인식개선 교육 유무와 사업체 이익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실시의 경우 3.42로 나타난 반면, 미실시는 3.0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사업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보다는 장애이해교육 등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구의 양적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매우 한정적(김용탁 외 2016)이었으며 주로 제도 마련, 교육 내용, 교육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먼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남용현 외(2012)와 최웅선(201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해경 외(2017)는 법적 근거가 갖춰지기 이전부터 장애 인식개선사업과 교육이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과 교육을 위한 강사양성사업도 이미 실

시하고 있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관 간 수준 차이를 없애고 모든 교육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제언했다.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 대부분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법적으로 장애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과 인식 변화의 중요함을 언급한 내용은 양세희(2022)의 연구가 유일했다. 연구는 장애 개념은 그 표현 자체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식 및 관련 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법률상 장애 및 장애인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에는 긍정적인 장애에 대한 설명과 이해와 공감하는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는 교육이라 제시한 김정아(2006)와 양옥승(2008)의 연구가 있었다. 이대식·김수연(2013)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델파이 방법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장애인식교육 내용에는 장애 관련 기본내용인 장애의 특징 및 관련 정보뿐 아니라, 장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성과 인권 존중의 내용도 포함되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상애 외(2004)와 최병민(2005)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해경 외(2017)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 종사자로 묶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교재, 어린이집 보모에서 대학교 교직원에게 이르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위한 교육교재, 중고등학생용 교육교재, 초등학생용 교재를 개발하였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통합교육기관 설립과 콘텐츠 발굴 등의 방향성을 제시한 김동일 외(2018)의 연구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참여형 장애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 김홍원(2022)도 있었다.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한 연구들 중에는 인권에 기반한 다양성 존중과 잘못된 장애 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활동들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를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를 장애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를 통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는 것과 역경을 딛고 희망적인 삶을 사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강사와 관련기관들이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 극복의 환상을 인식개선의 사례로 활용하는 등 왜곡된 장애 개념을 양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로 대부분은 교육의 효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 학생의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 치중되어 있다(남용현 외, 2011). 이

종남 외(2018)은 기존 연구들이 장애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또는 특정 대상을 한정 짓는 있는 경향이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관계로 장애인을 바라보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장애수용태도나 인식변화에서 범위를 넓혀 장애 인권교육,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과 다름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이동석 외, 2019). 또 김성진(2015)은 학생들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장애인식 교육 참여 경험집단이 미참여 경험집단에 비해 장애 편견은 낮게 나타나고, 관심과 배려, 장애 친구 수용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인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최윤영 외(2009)는 자료분석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사업체 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조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장애 개념 정의와 이를 정책화하는 일이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지표 개발을 통해 올바른 장애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성의 존중과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의 능력과 기여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해외의 장애인식개선교육(awareness raising) 현황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해외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다수 국가들의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과 방법은 여전히 장애에 대한 정보제공과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차별 등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 체험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정부 주도적으로 장애인 주관을 지정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장애 체험, 세미나 등의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날 하루를 특정하고, 기업체 혹은 장애와 관계되는 복지, 교육기관들이 참여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에 비해 다른 나라들은 장애인 주관에 모든 국민을 참여 대상으로 하여 국가 차원의 인식개선을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호주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실행을 위해 국가장애전략(2010-2020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이하 NDS)을 수립하고 내용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수용증진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수용

증진 내용에 올바른 장애 개념 설명과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 관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 한편, 우리나라와 차별화된 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에는 참여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고, 영국과 호주처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를 생산하여 공유하는 국가도 있었다.

1) 일본

일본은 장애인 관련 정책의 방향은 모든 국민이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없이 인격과 개성을 상호 존중해가면서 공생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기본법」에 규정된 「장애인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계몽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김동일 외, 2018). 장애인기본법 제9조 장애인주간 내용은 ① 국민 간에 폭넓은 기본원칙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을 설정 ② 장애인주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1주간으로 함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 지원 등에 관한 활동을 실행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 긴밀한 연계협력을 도모해가면서, 장애인주간의 취지에 걸맞은 사업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표 4> 일본장애인주간 주요행사

구분	행사명칭	대상자	내용	주관
1	장애체험 교실	대학생	휠체어 체험, 보조공학기기 체험, 고령자 모의 체험 및 요양체험을 통해 심리적 장벽 제거 추진	국토교통성 관동운송국
2	교통장벽 제거 비교체험 코스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관련 업무 담당직원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통장벽 제거, 관련시설 설계, 감독 및 유지관리 등에 장애인의 편의가 반영되도록 함	국토교통성 긴키지방 사무소
3	모범장애인 장관 표창	장애인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하여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후생노동성 장관 표창	후생노동성
4	인권주간	국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연간 강조사항을 알리는 각종 인식개선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함	법무국
5	장애인주간	국민	장애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3일간	대학

	연속 세미나		연속으로 교육, 복지, 고용과 관련된 테마의 세미나 개최	직업재활 협회
6	인권주간 인식개선 활동	국민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슬로건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시회 등 실시	지방법무국
7	전국 특별지원 교육진흥 협의회	학교관계자 학생부모 관련단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전국 현황 및 추진정책에 대해 관계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	문부과학성 초등교육과
8	유니버설 디자인추진 공모자 표창	관련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자에 대한 내각부 장관 표창	내각부
9	장애인식 개선 관련 광고	국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신문, 방송 홍보책자,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	도쿄도 가나카와현 와가야마현
10	장애인 제작 상품 전시판매회	국민	장애인의 제작품 전시 및 판매	고지현 센다이시

출처: 김동일 외(2018).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구축방안 연구」. p. 53 재구성

일본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팸플릿을 작성해서 배포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 특히 말단기관인 현에서 주관하고 현재까지 특정 센터나 공공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인식개선 전담 강사양성이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미국

미국은 1992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제정된 이후 정부 기관과 기업 대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장애인의 고용과 합리적인 조정서비스가 강조되었다. 특히, 장애인 재활서비스행정처(RSA)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매년 10월 장애인고용인식의 달(Disability Employment Awareness Month)을 통해 장애인고용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있고 특정한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보다 건강, 장애 관련한 다양한 인식개선의 날을 정하여 비영리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인식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김동일 외, 2018). 미국 뉴욕에서 학교 교사와 보건선생들이 회원인 NYSUT단체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장애인식교사도구(Disability Awareness Teacher Toolkit)를 교사들에게 보급하여 장애인식교육 방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내용에는 인식, 유사성, 수용, 독특성, 통합성이라는 5가지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표 5> NYSUT의 장애인식교사도구

구분	주요 개념
장애인식교사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Awareness):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음. 학급으로 장애인 초대 및 질문 • 유사성(Similarity): 장애인과 비장애학생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졌는지 • 수용(Acceptance):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했을 때 느낌, 장애인이 느끼는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사례제공 • 독특성(Uniqueness): 독특하다고 느끼는 상황 묻기 • 통합성(Inclusion)

미국의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사례로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장애인 리소스센터(Resource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RCPD)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RCPD에서는 장애 대학생들을 포함한 비장애 대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인 Awareness & Explorations in Ability Resources(이하, AEAR)를 실시하고 있다. RCPD는 장애를 자폐스펙트럼, 전맹 및 시각장애, 뇌손상, 만성 건강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 및 주의력 결핍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일시적 장애, 기타 장애와 같이 9개로 분류하여 장애로 인한 어려움, 차별 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인 AEAR은 교직원 및 비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최근 이슈, 장애 관련 단체, 보조공학, 장애관련 법률 등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혜경 외, 2017).

<표 6> AERA 장애인식프로그램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담은 동영상 •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육성 • 장애인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RCPD직원의 경험 이야기
교수와 학과 직원을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정보 • 정당한 편의 제공 방법에 대한 동영상 • 교수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방법 • 정당한 편의 제공 우수 실제 사례
장애에 대한 정보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간행물 • 잡지 간행물 • 장애 관련 단체 및 기관 • 보장구

보장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구 종류 • 보장구 사용법과 제공방법
동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견 등 동물의 역할과 자립생활 • 안내견 등 동물 취급 규정
법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장애인과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중심의 언어 사용 •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뇌전증의 이해 • 통합교육의 의미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스포츠 소개 • 접근 가능한 여가활동 장소 소개

출처: 이해경 외(2017).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 p. 24-25 재구성.

3) 영국

영국은 2010년의 평등법(The Equality Act)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비영리자원봉사조직들의 주도하에 매년 7월 장애인식의 날(Disability Awareness Day)을 지정하여 다양한 전시활동, 스포츠, 예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김동일 외, 2018). 영국의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사례로 학령기 비장애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영국의 장애인 단체인 장애행동연합(Disability Action Alliance, DAA)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DAA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내용은 일반 가이드라인, 교과목에 따라 교실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 장애 혐오 범죄, 장애와 여가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해경 외, 2017).

<표 7> DAA의 인식개선 영역과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일반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에 대한 일반 사항 • 장애인식에 대한 일반 사항
과목 및 상황에 따른 인식개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에 대해 토론 하는 방법 • 장애에 대한 편견 • 이야기 속 장애인 모습 • 동영상을 활용한 장애 인식개선: 장애 역사, 인식개선 노력, 대중매체 속 장애인, 일상 속 장애인 차별, 장애와 인권, 교육 내 통합교육, 장벽 제거 노력 등 • 문학과목을 통한 인식개선: 장애에 중점을 두는 시, 장애와 관련한 초등학교 문학서적, 뉴스를 통한 장애 등 • 수학을 통한 인식개선: 영국 장애인 고용률 자료, 장애와 고용 통계,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활동 등 • 역사과목을 통한 인식개선: 장애와 역사, 영국의 장애역사, 영국의 장애인의 달 제정과 관련 역사적 배경 등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방법 • 청각장애인에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
장애와 여가활동	•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소개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여가활동의 종류와 관련 단체 소개

출처: 이해경 외(2017).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 p. 24-25 재구성.

4) 호주

호주는 1986년 설립된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장애차별담당위원을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교육 및 장애인 인식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호주인권위원회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로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을 시행하고 근로자의 차별적 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주를 위한 장애행동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실행을 위해 국가장애전략(2010-2020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이하 NDS)을 수립하여 6가지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2번째 영역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수용증진을 포함하였다(김동일 외, 2018).

호주의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의 첫 번째 사례는 호주 정부 계획의 국가장애조정담당관프로그램(National Disability Coordination Officer Program)의 일환으로 개발된 장애인식훈련(Disability Awareness Training)은 무료 이러닝 훈련으로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다(김동일 외, 2018).

<표 8> 호주장애인식 훈련 프로그램내용

구분	세부 내용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 근로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당사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험 • 장애인이 고객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 텍스트, 퀴즈가 포함된 온라인 훈련
장애와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소개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여가활동의 종류와 관련 단체 소개

출처: 김동일 외(2018).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 p. 65 재구성

두 번째 사례는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장애 대학생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대학생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인식개선을 위

한 교육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비장애 대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으로 6단계의 교육용 모듈(Learning Modules)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모듈에 따라 인식개선과 관련된 내용과 적용 방법 및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혜경 외, 2017).

<표 9>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모듈

영역	세부 내용
모듈 1: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론 •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상식 • 언어, 용어, 행동 • 적용을 위한 활동
모듈 2: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론 • 차별이란 무엇인가? • 장애차별법률(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교육과 관련된 장애 규범 및 법률 • 장애 행동 계획(Disability Action Plan) • 적용을 위한 활동
모듈 3: 장애와 장애에 의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론 • 장애의 종류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학습장애 • 지체장애 • 심리적 및 정신과적 증상 • 자폐 스펙트럼 장애 • 신경과적인 증상 • 뇌손상 • 의료적인 증상 • 적용 가능한 활동
모듈 4: 정당한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론 •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 • 과도한 부담 • 정당한 편의 결정 방법 • 정당한 편의의 종류 • 정당한 편의와 특별 고려사항 • 적용 가능한 활동
모듈 5: 통합적 교수법 접근 가능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론 • 통합이란 무엇인가? • 통합교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통합 교육의 실제와 사례 • 접근 가능한 학습 • 추가자료 • 적용 가능한 활동
모듈 6: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위한 장애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론 • 두려움과 불확실 • 업무환경과 상호작용 •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팁 • 적용 가능한 활동
추가 정보: 시드니대학교의 장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대학교 장애 대학생 서비스 • 시드니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일반 정보 • 대학생으로서의 역할 • 교수 및 학생지원 담당자(Faculty Disability Liaison Offices) • 적용 가능한 활동에 대한 해법

출처: 이해경 외(2017).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 p. 24-25 재구성.

5) 캐나다

캐나다는 13개의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입법 및 행정 권한으로 각 지방 정부는 장애인 복지 및 고용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 및 지원을 실행하고 있으며 독립된 별도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김동일 외, 2018). 대표 사례로 캐나다 지방정부 중 온타리오(Ontario) 주는 장애인을 위한 장벽 없는 (barrier-free)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외에, 2005년 장애인접근성법(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AODA)을 제정하였으며 캐나다 내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부터 장애인 인식 위원회(Disability Awareness Consultants)를 구성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고용주들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며, 기관을 방문하여 실제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장벽이 있는지 평가하고 부적절한 곳이 있다면 장애인들의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고용·사회발달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태도(attitude) 변화를 위하여 대국민 온라인 참여 설문문을 통하여 정부가 캐나다의 장애인식 개선 및 태도 변화를 위하여 장, 단기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를 2,339명에게 실시하였고, 결과는 광고,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이 44%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법과 제도 및 기관을 구성(25%), 고용현장에서의 접근성 보장(15%), 공공부서 및 정책 입안과 같이 정부 주도 사례제공(14%), 학교에서의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13%) 등이 제안되었다(김동일 외, 2018).

1981년 캐나다의 ‘Special Committee on the Disabled and the Handicapped’ 의

‘장애 보고서’에(Obstacles Report)에서 처음으로 ILC(Independent Living Centre)를 설립하였고, 1984년에 두 번째로 Winnipeg지역에 Independent Living Resource Centre 가 설립되어 장애인들의 주거, 교육, 상담 및 지원, 접근성 등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기관에서는 1984년부터 2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왔고, 그 중 대표적인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DART(Disability Awareness Resource Training)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 9> 와 같다.

<표 10> 캐나다 ILC(Independent Living Centre)의 DART 프로그램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프로그램 주제	• 직장 내 적응과 조정
	• 일반적인 장애 인식
	• 교통
	• 재난과 응급 상황 관리망
	• 환대와 관광
	• 동반자 지원
	• 안내견
	• 접근 가능한 장비와 공학 대체 미디어
	• 회의 이벤트 계획
	• 언어 전문용어
	• 웹사이트 접근성
	• 그 밖에 기타
프로그램 전달방식	• 지역사회 지향 훈련
	• 공개토론회
	• 웹 토론
	• 비디오
	• 그룹 토의와 역할극
	• 유인물 활동 퀴즈
	• 프레젠테이션

출처: 김동일 외(2018).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 p. 71 재구성

Ⅲ. 장애인식개선 교안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 및 틀

1) 분석 대상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학적 관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성인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1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제공하는 성인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안(1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 (1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인권교육 표준교안(1건)으로 총 4건의 표준교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교육 표준강의안은 인권교육 교안이지만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은 <표-1>과 같다.

<표 11> 공공부문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분석 대상

구분	제목	기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성인용)	인식의 새로운 킷 플러스+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	편견을 걷어내면 인재가 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안 (성인용)	더불어 행복한 세상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인권교육 표준강의안	장애인인권길라잡이1,2,3,4	국가인권위원회

2) 분석 틀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 분석을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한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³⁾ 제8조(인식의 제고)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3) 이 협약은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각국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목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이동석 외, 2019) 연구보고서⁴⁾를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장애인식개선교육목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 사회(inclusive society) 조성으로 총 5개이다.⁵⁾

교육목표 첫째,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은 권리의 주체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CRPD 제8조). 이에 세부지표는 권리의 주체가 되는가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를 살펴보았다. 실질적인 권리의 내용은 권리 목록의 나열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존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내포할 필요가 있다(박승희 외, 2022). 이에 따라 세부지표는 1) 장애인을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사회의 권리주체로 평가하고 있는가? 2)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과 긍정적 인식의 향상을 포함하는가? 로 하였다.

둘째,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은 사회적 기여와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의 주요한 내용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과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이혜경 외, 2017). 또한 박승희 외(2022)는 개인의 역량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개인의 직무수행 역량의 가치와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그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특성별 ‘정당한 편의’ 지원으로 능력과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여야 하고, 실제 기여사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세부지표는 3)장애특성별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지원된다면 장애인의 능력향상과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는가? 4)장애의 사회적 기여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가? 로 정하였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 관점과 고정관념 및 차별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이 특정 장애로 인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에 관해 서술할 때 사회가 장애를 고려하여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변경한다면 해당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이혜경 외, 2017). 다시 말해 장애는 사회적 구조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동석 외(2019)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과 편견, 차별과 인권침해를 지속해서 재생산해내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 인권의 증진의 강조는 오히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고 왜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장애 관점

4) 국가인권위원회(이동석 외, 2019)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보고서 참조.
5) CRPD 제8조 인식 제고 조항 indicator의 21가지 지표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인 1~3조항만을 활용.

을 가져야 하며, 고정관념과 차별 또한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세부지표는 5)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가? 6)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혹은 차별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와 사례를 알려주는가? 로 정하였다.

넷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은 사회참여 사례, 인권의 포괄성과 실천의지로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전문(v)에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권리보장을 위해 동등한 접근성을 통한 사회참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권리보장 증진은 인권적 태도나 가치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실천까지 이루어졌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부지표는 7)동등한 접근성 보장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사례를 제공하였는가? 8)인권 지식, 인권적인 태도나 가치,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인지·정의·행동 영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는가? 9)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가? 로 하였다.

다섯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 조성은 동등한 시민구성원이라는 관점과 통합사회 실천방안으로 설명할 수 있다(박승희 외, 2022).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자원을 똑같이 이용하는 것,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이익섭, 2003; 오혜경 외, 2011). 이는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구성원으로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고 포함되는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 장애를 다양한 특성 중 하나라는 인식과 동등한 시민구성원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세부지표는 10)장애인을 동정과 시혜 혹은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된 지역의 동등한 이웃과 시민구성원이라는 관점을 제공하는가? 11)통합사회를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주는가? 로 하였다.

교육목표별 세부지표는 CRPD 제8조(인식의 제고)의 세 가지 속성을 근거로 10개의 세부지표를 수립하여 활용하였다. 세 가지 속성은 1.고정관념과 유해한 관행에 대한 저항, 2.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3.장애인에 기여로 구성된다.

교육목표별 CRPD 제8조의 세 가지 속성을 연결하면,⁶⁾ 교육목표1(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는 CRPD 제8조 2(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해당되며, 교육목표2(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는 CRPD 제8

6) CRPD 제8조 인식 제고 조항 indicator의 21가지 지표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인 1~3조항만을 활용.

조 2(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와 3(장애인에 기여)이 해당된다. 교육목표 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은 CRPD 제8조의 1(고정관념과 유해한 관행에 대한 저항)에 해당된다. 교육목표4(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는 CRPD 제8조의 2(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해당되며, 교육목표5(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는 CRPD 제8조의 1(고정관념과 유해한 관행에 대한 저항), 2(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3(장애인에 기여) 모두 해당된다. 공공부문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 분석틀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 12> 공공부문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분석틀

교육목표	세부지표	근거자료
1.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1)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의 권리주체로 평가하고 있는가?	CRPD 제8조의 2
	2)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과 긍정적 인식의 향상을 포함하는가?	CRPD 제8조의 2
2.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3)장애특성별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지원된다면 장애인의 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는가?	CRPD 제8조의 2,3
	4)장애의 사회적 기여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가?	CRPD 제8조의 2,3
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5)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가?	CRPD 제8조의 1
	6)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혹은 차별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와 사례를 알려주는가?	CRPD 제8조의 1
4.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7)동등한 접근성 보장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사례를 제공하였는가?	CRPD 제8조의 2
	8)인권 지식, 인권적인 태도나 가치,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인지·정의·행동 영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는가?	CRPD 제8조의 2
	9)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가?	CRPD 제8조의 2
5.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 조성	10)장애인을 동정과 시혜 혹은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된 지역사회의 동등한 이웃과 시민구성원이라는 관점을 제공하는가?	CRPD 제8조의 1,2,3
	11. 통합사회를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주는가?	CRPD 제8조의 1,2,3

3) 측정 방법

세부지표1)권리주체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설명한 경우 ○,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거나 권리의 주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

로 보는 내용이 없는 경우 ×로 측정하였다. 2)인식과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과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긍정적 인식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부정적 인식에 대한 내용만 있고 긍정적 인식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로 측정하였다.

세부지표3)기여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손상에 따른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손상에 따른 사회적 기여를 제시한 경우 ○, 손상에 따른 사회적 기여는 아니지만 사회적 지원에 의해 장애인이 자본주의적 생산능력을 통해 기여를 제시한 경우 △, 기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로 측정하였다. 4)기여 사례에 대해 기여 사례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사례가 부족한 경우 △, 사례를 없는 경우 ×로 측정하였다.

세부지표5)사회적 모델 관점에 대해 장애를 개별적 모델 관점이 아닌 사회적 모델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장애 관점으로 장애를 설명하는 경우 ○, 장애를 의료적 관점으로 보는 경우 ×로 측정하였다. 6)고정관념 및 차별사례와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차별 사례를 설명하는 경우 ○, 고정관념 또는 차별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고정관념과 차별사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로 측정하였다.

세부지표7)사회참여 사례에 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 ○, 사회참여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사회참여 사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로 측정하였다. 8)인권의 포괄성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위한 인권의 전반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 인권의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한 경우 △, 인권의 전반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 ×로 측정하였다. 9)인권의 실천의지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 및 편의제공 등 실제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경우 ○, 인권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경우 △, 실천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로 측정하였다.

세부지표10)다양성에 대해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동등한 이웃과 시민구성원이라는 관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보며, 동등한 시민이라는 관점을 제시할 경우 ○,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등한 시민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라고 보지 않고, 동등한 시민이라는 관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로 측정하였다. 11)실천방안에 대해 통합사회를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통합사회를 위해 실천방안을 제시할 경우 ○, 실천방안이 부족한 경우 △, 실천방안이 없는 경우 ×로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 13> 세부지표 기준 측정방법

교육목표	세부지표	측정기호		
		○	△	×
1.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1)권리주체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권리의 주체로 보는 경우	장애인의 권리를 협소하게 다루고 있거나, 권리의 주체라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경우
	2)인식	부정적 인식의 개선과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긍정적 인식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경우	부정적 인식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경우
2.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3)기여	손상에 따른 사회적 기여를 제시한 경우	사회적 지원에 의해 자본주의적 생산능력을 통한 기여를 제시한 경우	사회적 기여가 없는 경우
	4)기여 사례	손상에 따른 사회적 기여 사례를 제시한 경우	사회적 지원에 의해 자본주의적 생산능력을 통한 기여 사례를 제시한 경우	사회적 기여 사례가 없는 경우
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5)사회적 모델 관점	사회적 모델 관점을 제공하는 경우	-	의료적 모델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
	6)고정관념, 차별사례	고정관념과 차별사례를 사회적 모델 관점으로 제시한 경우	고정관념과 차별사례를 의료적 모델 관점으로 제시한 경우	고정관념과 차별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4.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7)사회참여 사례	사회참여 사례를 제시한 경우	사회참여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회참여 사례가 없는 경우
	8)인권 포괄성	인권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인권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9)인권 실천의지	베리어프리, 편의제공 등 인권 실천의지가 포함된 경우	인권 실천의지가 부족한 경우	인권 실천의지가 없는 경우
5.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 조성	10)다양성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보고 동등한 시민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봐야한다고 하지만 동등한 시민이라는 관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보지 않고, 동등한 시민이라는 관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1)실천방안	통합사회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통합사회를 위한 실천방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실천방안이 없는 경우

2. 분석 결과

공공부문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목표 및 CRPD제8조(인식의 제고)에 근거한 분석들을 활용하여 <표-3>의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지표는 핵심 키워드로 변환하여 작성하였으며, 공공부문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 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14> 공공부문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분석 결과

교육목표	세부지표	한국 장애인 개발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한국 장애인 재단	국가 인권 위원회
1.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1)권리주체	○	△	×	○
	2)인식	○	△	△	△
2.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3)기여	△	△	×	×
	4)기여 사례	×	△	×	×
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5)사회적 모델 관점	○	○	×	○
	6)고정관념, 차별사례	○	○	△	○
4.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7)사회참여 사례	○	○	×	×
	8)인권 포괄성	○	○	△	○
	9)인권 실천의지	○	×	×	○
5.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 조성	10)다양성	○	△	△	△
	11)실천사례	○	×	×	×

공공부문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별 각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 강의안

한국장애인개발원 성인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표준교안의 목차는 ①장애(장애란?/국내외 장애현황 및 동향/장애 인식의 변화과정/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 장애란?), ②인권(장애인의 인권/인권 존중을 위한 언어적 관점/장애인 차별금지), ③다양성(다

양성의 중요성/장애와 다양성/다양성의 실천), ④자율·자립(자립 생활의 배경과 필요성/자율·자립 관련 법과 제도/자립한다는 것/자립생활의 실제/지역사회, 우리가 바꾸자), ⑤접근성(접근권/장애인등편의법/이동권/정보접근권/보조기기/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5개로 이루어져 있다. 교안의 분량은 표지 포함 총 238개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안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1의 세부지표 1)권리주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접근권과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한 편의시설 의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보조기기 등을 근거로 장애인들이 권리의 주체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2)인식과 관련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장벽이 있음을 사례로 제시하며, 내가 가진 인식의 기준에 따라 타인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육목표2에 대한 3)기여에 대해 장애특성별 보조기기 및 정보접근성 등 정당한 편의가 지원된다면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으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4)기여 사례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셋째, 교육목표3의 세부지표인 5)사회적 모델 관점에 대해 장애의 개념을 국내법에 따른 정의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UN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규정을 함께 설명하며, 장애에 대한 개념이 개인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참여에 제약을 받는 자’로 다시 정의하며,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이라는 의료적 모델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저해된다’는 사회적 모델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6)고정관념 및 차별사례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퀴즈 형식으로 제시하고, 사물, 제도, 관행, 관념, 기타 사회적 장벽에 따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장벽이 되는 다양한 차별사례를 다루고 있다.

넷째, 교육목표4에 대한 7)사회참여 사례에 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실제라는 소주제로 자립생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사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스웨덴의 탈시설 및 자립사례와 자율·자립 관련 법과 제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인권 지식, 인권적인 태도나 가치,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8)인권의 포괄성에 대해 장애인의 인권과 인권 존중을 위한 언어적 관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9)인권 실천의지에 대해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및 편의제공 등 인권 실천을 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교육목표5에 대한 10)다양성과 11)실천사례에 대해 다양성의 중요성과 장애와 다양성의 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있으며, 다양성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표준 강의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표준교안의 목차는 ①장애인고용,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②함께 일하는 동료 이해하기, ③장애인 고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④함께 일하기,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안의 분량은 표지 포함 총 39개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교안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1의 세부지표 1)권리주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 스스로 자립할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인식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한 동등한 노동활동 참여를 강조하며,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들어 긍정적 인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 의미에 대해 롤스의 「정의론」 중 ‘최소극대화의 법칙’을 제시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소득계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분배가 최적 재분배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될 때, 이러한 불평등은 오히려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교육목표2에 대한 3)기여 및 4)기여 사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도입 및 직무개발, 편의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의 노동을 통한 기여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 기여라기보다 장애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는 사회적 기여라기보다 장애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능력주의로 해석된다.

셋째, 교육목표3의 세부지표인 5)사회적 모델 관점에 대해 장애의 개념을 UN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관점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의료적 관점을 함께 제시하며, 장애를 보는 관점이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장애를 보는 관점에 따른 질문의 형태도 달라져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의료적 관점의 15개의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알코올 중독, 스웨덴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 등 국가마다 다른 장애인 인정 범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6)고정관념 및 차별사례의 경우, 시혜와 동정, 봉사, 극복으로 재현되는 대중매체 속 장애인의 모습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다루고 있으며,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차별사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내 차별유형에 대한 설명 외에 차별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넷째, 교육목표4에 대한 7)사회참여 사례에 대한 내용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물적인 지원, 직무재배치/인력지원 서비스/제도개선 등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며 정당한 편의는 고용과 관련된 전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 지식, 인권적인 태도나 가치,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8)인권의 포괄성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장애인인권헌장,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설명하며,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9)일권 실천의지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교육목표5에 대한 10)다양성과 11)실천사례에 대한 내용은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 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한국장애인재단: 성인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안

한국장애인재단 성인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표준교안의 목차는 ①장애인에 대한 편견버리기, ②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③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추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안의 분량은 표지포함 총 26개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교안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1의 세부지표인 1)권리주체에 대해 경사로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을 제시하며 사회적 제약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을 뿐,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의 권리주체로 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2)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에 대한 긍정적 장점을 먼저 봐야 한다는 소재목에 해당되는 교안을 ‘빈칸’으로 두어 강사의 역량에 따라 긍정적 인식에 대해 전달되는 교육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목표2에 대한 3)기여 및 4)기여 사례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교육목표3의 세부지표인 5)사회적 모델 관점에 대해 장애의 정의를 ICIDH의 3가지 분류인 손실(Impairment), 기능·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불리(Handicap)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 수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나은우 외, 2009)으로 장애에 대한 관점이 의학적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6)고정관념 및 차별사례에 대해 장애인 차

별금지법의 차별유형과 차별금지영역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차별사례에 대한 예시가 충분하지 않았다.

넷째, 교육목표4에 대한 7)사회참여 사례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권 지식, 인권적인 태도나 가치,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8)인권의 포괄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겉모습만 다를 뿐’이라는 내용에서 존엄성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인권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9)인권 실천의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교육목표5에 대한 10)다양성에 대해 다양한 동료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만 ‘다름에 따른 문화 이해하기’에 대한 내용이 장애유형별 이해로 국한되어 있었으며, 11)실천사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교육 표준 강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교육 표준 강의안은 [1부. 장애를 바로 보는 ‘올바른 관점’], [2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존중의 ‘에티켓’], [3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4부. 장애를 넘어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제1장 장애란 무엇인가’, ‘제2장 장애인 인구현황과 장애범주’, 2부는 ‘제3장 장애유형별 이해와 에티켓’, ‘제4장 장애인 보조기기와 편의시설’, 3부는 ‘제5장 장애인 인권과 차별’, ‘제6장 장애인 인권보장 역사 및 법과 제도’, 4부는 ‘제7장 장애인 관련 국가인권위 결정례’로 구성되어 있다. 교안의 분량은 표지 포함 총 193개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교안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1의 세부지표 1)권리주체에 대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통한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장애인들이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권리의 측면이 보조기기와 편의시설로만 협소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인식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키워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버리고, 장애인은 불행하고 무능력하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장애유형별 에티켓 중 자폐성장애 특성에 템플 그랜딘의 자서전의 일부(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싫고(중략), 누군가 나를 만지면 언제나 아팠고 무

척 무서웠다. 지각 과민성 때문에 무서워서 피하고 만다)를 신고 있어, 이를 자폐성 장애인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그 외 정신적 장애:정서 장애/학습장애’에서도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며, 때리기, 싸우기, 친구 놀리기, 소리 지르기, 반항하기, 울기, 물건 뺏기 등의 행동을 자주 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 또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수도 있다.

둘째, 교육목표2에 대한 3)기여에 대해 장애인보조기기와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으며, 4)기여 사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교육목표3의 세부지표인 5)사회적 모델 관점에 대해 장애의 개념을 국내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의를 제시하며, 이는 개인의 신체적 손상과 의료적 접근을 강조한 개인적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모델이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어가야 함을 강조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와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되는 사회적 모델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장애개념을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비교 설명하며, 사회적 모델 관점인 UPIAS의 장애개념⁷⁾을 제시하고 있다. 6)고정관념, 차별사례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및 오해와 진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지칭, 비하 발언 예시 등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례를 통해 직장 내에서의 차별, 거주 및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교통 및 편의시설에서의 차별, 투표권 침해, 교육시설에서의 차별 등 다양한 영역의 차별사례를 다루고 있다.

넷째, 교육목표4에 대한 7)사회참여 사례에 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8)인권의 포괄성에 대해 장애인 차별 역사와 실태, 차별사례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 보장 역사 및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장애인권리선언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9)인권 실천의지에 대해 장애인보조기기와 편의시설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교육목표5에 대한 10)다양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에티켓에 대한 내용으로 협소하게 다루고 있으며, 11)다양성의 실천 사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7) UPIAS(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분리에 반대하는 신체장애인 연합)에서 정의한 ‘장애개념’으로 ‘장애란 신체적 손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거의 또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으므로써 그들을 사회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시키는 당대의 사회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한’을 말한다(출처:장애학 함께 읽기(그린비)(김도현, 2019)).

3. 함의

사회적 모델에 바탕을 두는 장애학 관점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고자 실시한 공공부문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을 분석하여 도출된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권리의 주체가 아닌 권리의 타자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안에서 경사로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을 제시하며 사회적 제약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만 언급되었을 뿐,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의 권리주체로 보는 내용은 없었다. 장애인의 접근권과 장애인등편의법 등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들이 권리의 주체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으나, 권리의 측면이 보조기기 와 편의시설로만 협소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 중심에서 장애인을 대상 화하고 있는 것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이나 관점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개념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 기여 사례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의 교안들이 장애인의 사회적 기여와 기여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거나, 고용과 관련하여 국한되어 다루고 있음에도 개념 혼란으로 인해 능력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조기구나 편의시설 보장 등으로 사회활동 및 직업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손상 자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기여 및 기여사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기여에 관한 개념 재정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례를 교육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일부 교안에서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유형별 에티켓을 설명하고 있다. 일부 장애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매우 협소한 사례를 제시하여,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특성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애유형에 대해 다룰 때는 장애 특성을 획일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장애에 따른 편이가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의 개념이 여전히 의료적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교안에서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모델로 설명하거나 사회적 모델과 의료적 모델을 함께 다루고 있었으나, 일부 교안에서 여전히 ‘개인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 수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진다’ 는 ICIDH의 장애 정의를 제시하며, 장애 개념을

의료적 모델에 국한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국내법에서 정의되는 장애 개념이 여전히 의료적 모델에 머물러져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외 정의에서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는 사회적 모델을 바탕으로 장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장애를 인간과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맥락으로 보고,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모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에 대한 내용이 물리적 접근성 보장에 치우쳐 있다. 대부분의 교안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과 보조기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등편의법」을 제시하며,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물리적 접근성 보장과 관련한 내용으로 치우쳐 있어, 인지적 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⁸⁾ 또는 쉬운자료 제공 등의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교육에 대한 접근성, 문화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사례와 함께 충분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권의 실천의지에 대한 매우 편협한 방법만 제시하고 있었다. 일부 교안에서 인권 실천 방안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프리, 편의제공 등만을 제시하고 있었고 일부 교안에서는 인권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일곱째, 통합사회를 위한 장애와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다. 일부 교안에서는 다양성을 장애유형의 다양성으로 설명하거나, 시혜의 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해 배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또 다양성을 위한 실천 사례 또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을 통합된 지역사회의 동등한 이웃과 시민구성원이라는 관점을 제공하고, 통합사회를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8) AAC는 ▲A(Augmentative): 말을 보완하거나 ▲A(Alternative):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해 ▲C(Communication): 의사소통한다는 뜻으로, 장애인들이 그림이나 글을 가리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다.

IV. 초점집단면접 결과 분석

1. 조사의 개요

1) 연구참여자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학적 관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가 중심의 집단면접 형태의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전문가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경험자를 대상으로 FGI를 구성하였다.

FGI 참여자 선정 방법은 질적 연구 표본 추출 방법인 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 기법은 특정 환경, 사람, 사건 등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선택에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거나 특정 경험을 많이 한 사람,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강민희 외, 2014). FGI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강사들에게 인터뷰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먼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 집단은 총 4명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자문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경험자 집단 또한 총 5명으로 강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참여자 그룹별로 2023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2회 진행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난 맥락이나 상황에 대하여 인터뷰 이후 추가 질문을 통해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룹별 면접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룹별 인터뷰 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5> 초점집단인터뷰 연구참여자 현황

구분	사례	직책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	전문가1	교수
	전문가2	회장
	전문가3	사무총장
	전문가4	팀장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강사1	센터장
	강사2	센터장
	강사3	강사
	강사4	강사
	강사5	교육활동가

2) 면접내용과 분석방법

초점집단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한 것을 텍스트로 기록하고,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개방코딩을 시행한 후 이를 연구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재검토 및 분류하여 맥락을 연결시켜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나열한 뒤 유사 범주를 공통된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경험이나 견해를 상위, 하위 주제로 묶어 상위 범주의 의미를 파악하고 열거된 세부 경험을 주제에 따라 세분화하며 재배치하였다. 이후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학적 관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를 하위범주들로 묶었으며 상하위 주제를 재구성하면서 분석하였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 심층 면접 분석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 31개의 개념과 12개의 하위범주 및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상위범주는 ‘인식개선교육의 현재’, ‘교육 목표의 가치를 방해하는 요소’, ‘바람직한 방향’, ‘또 다른 인식개선의 도구, 미디어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6>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 심층 면접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식개선교육의 현재	특정대상에게만 의무로 인식되는 교육	교육 대상에게만 존재하는 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교육이 주는 모호함
	측정하기 어려운 효과	드러나지 않는 효과성 그럼에도 필요한 인식개선교육
	의료적 관점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	혐오로 비춰지는 교육 내용 시혜와 감성에 머무른 교육 내용
교육 목표의 가치를 방해하는 요소	모호한 교육의 정체성	교육을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교육 대상자 모호하게 설정된 목적과 목표로 야기되는 괴리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정책의 괴리
	교육 품질에 대한 부진한 담보	검증할 수 없는 교육 효과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교육
	강사로부터 담보되기 어려운 교육의 목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최대의 가이드라인화

		장애인 강사 진입을 방해하는 강화된 강사 요건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혐오와 배제	부정적 편견을 부추기는 미디어 노출되지 않는 미디어 속 장애
바람직한 방향	의무적 참여 강화	변화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꼭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의 이미지 확보
		권력자가 참석하는 교육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	정보 전달 형식에서 벗어나기
		그럼에도 삭제하지 못하는 정보 전달
		변화하는 장애 개념 속 개별화된 접근
		다양성 존중을 포함하는 교육
	교육 전달체계로서의 강사 역량 강화	단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 성과 기대
		강사의 역량으로 담보될 수 있는 강의 품질
		교육 주체로서 드러나는 당사자성의 체화
전달체계로서 확보되어야 할 장애인 당사자의 진입		
또 다른 인식개선의 도구, 미디어의 변화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개발	병행되어야 할 교육 기관의 역할 변화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장애가 포함된 미디어와 언론	미디어 콘텐츠를 접목한 교육 방식에 대한 고려
		다양한 미디어에 등장해야 하는 장애인 민감한 언론으로 위치

1) 인식개선교육의 현재

인식개선교육의 현재로는 ‘특정대상에게만 의무로 인식되는 교육’, ‘측정하기 어려운 효과’, ‘의료적 관점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 으로 나타났다.

(1) 특정대상에게만 의무로 인식되는 교육

① 교육 대상에게만 존재하는 인식개선교육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위치하면서 교육 대상이 아닐 경우 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나타났다. 전문가3의 경우 일본을 예시로 들며 영향력이 있는 기자, 엘리트 등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교육의 인식 정도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법정의무교육은 국민 전체가 교육 대상이 아닌 각 교육의 근거 법령에 해당하는 특정 집단(사업장, 학교 등) 및 직업에 소속된 사람이 교육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교육 대상이 아닐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인지

여부가 낮을 수 있다.

전문가1: 의무 대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인지도가 있을 텐데 보면 예를 들면 그 대상이 아닌 사람들 일반 시민이라고 해야겠죠.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3: 사회적으로 해서 연예인이 참여하고 싶고 일본처럼 일본은 신인 배우들이 꼭 장애인 관련 드라마나 이런 걸 해야 다음에 훌륭하게 연기자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 생각한 것처럼 사실은 그런 사회적 기재를 좀 만들어야 다양한 미디어들이 개발될 것이고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간에 얘기했지만 언론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중적인 말도 안 되는 걸 양성한 이유가 기자들이나 엘리트들은 이 교육에 대해서 참여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② 법정 의무교육이 주는 모호함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률을 근거로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의 근거마다 교육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전문가3은 법정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는 인식개선교육이 적절한 도구로서 쓰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법률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다름에도 ‘장애’를 다룬다는 것으로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정리가 필요함을 진술하였다. 실제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고등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각 법률마다 대상, 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전달하는 내용 또한 상이하다.

전문가3: 우리가 법정 교육을 했다는 얘기는 앞에 말한 대로 그런 차별을 없애고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한 교육일 텐데 사실은 그 도구가 조금 헛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인권교육이라고 하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고 하고 또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이라고 하고 사실은 굉장히 법정 교육이 기관에서는 헛갈립니다. (중략) 특수교육법에 따른 인권교육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인권교육과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의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취지가 다른데 이거를 집행할 때는 장애인을 다루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통 치는 것부터가 법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

전문가4: 각 법정 의무 교육 제도별 그러니까 직장 내 교육,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관련된 교육 내용은 분명히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고 분명히 가르마를 타야 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도구로서 인식개선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서 위치하는 것임에도 정체성이 미약함을 지적하였다.

전문가3: (법정교육실태점검에 민감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며)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게 인권 교육을 좀 감시하고 압박하는 도구로 쓰라는 의미도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아직도 미약하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3) 측정하기 어려운 효과

① 드러나지 않는 효과성

전문가들은 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전문가1은 현장에서 강사들의 피드백을 통해 성과를 알 수 있는 정도이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문가4는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인식개선교육이 추구하는 인식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없어 효과성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하였다.

전문가1: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조사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육의 만족도 정도로 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객관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강사분들이 이제 알음알음 피드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과를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럴 때는 약간 그 성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정보 제공 수준이고 약간 당위적인 사고를 하는 정도...

전문가4: 이제 법정 의무교육 대상 기관에 소속한 근로자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받아야 하는 교육이구나 하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 실시를 했을 때 얼마나 정말 인식이 변화되는가?' 특히 인식의 변화라고 하면은 생각이 변함으로써 삶의 변화까지 그들 개인의 어떠한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인식의 변화까지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판단은 어렵다. (중략) 효과성 어떤 교육 방법에 대한 효과성을 알기 전에는 인식의 변화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지표조차도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

인식개선교육의 콘텐츠가 실제로 고용 현장의 장애인 당사자나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효과에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자문이나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로 제작되는 가이드라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 등의 도구를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전문가3: 이 연구 말미에는 실제로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한테 이 콘텐츠를 보여줘서 '니가 정말 여기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됐나'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어떤

결 만들 때 그 현장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불러서 보여준 다음에 정말 자부심이 생겼나 즐겁나 함께하고 싶나 비장애인 친구한테는 이런 애를 낳고 싶나 기르고 싶나 입양하고 싶나라고 했을 때 '콘텐츠를 보고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고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문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콘텐츠를 개발할 때 이렇게 자문 기구나 평가하는 기구가 없다는 거죠.

② 그럼에도 필요한 인식개선교육

인식개선교육의 측정가능 여부가 아닌 효과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삶의 주변에 장애와 장애인이 존재함에 대해 소통의 기회가 적으므로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궁극적으로 분리가 아닌 통합을 지향하므로 교육이라는 인위적인 도구를 활용하 필요 있음 을 의미한다.

전문가2: 인식개선 강의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협소하게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명명된 것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는 인식개선 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략) 장애를 접하지 못한다는 게 내가 장애를 입어서 장애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나 소통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4) 의료적 관점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

① 혐오로 비취지는 교육 내용

인식개선교육의 지식과 정보 전달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형식의 과거 교육 내용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전문가3: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주면 장애인 인권 교육은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혐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한걸 보면 오히려 장애 인권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혐오와 차별이 심해졌으니까...

전문가4: 과거의 교육 어떤 감성을 건드리거나 너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② 시혜와 감성에 머무른 교육 내용

교육의 질적인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 콘텐츠의 방향이 장애인의 위치를 ‘시혜의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는 장애의 다양성보다 ‘어렵고 힘든’을 강조하는 것이 시혜적 존재를 넘어 두려움을 양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가3: 장애학에서의 이제 장애인 인식 교수할 때 다양성 교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장애인 관련 콘텐츠는 다양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뭔가 어려운 존재 힘든 존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베풀어야 되고 이해 되는 존재가 있어서 오히려 두려움을 양상하는 교육이 될 때도 좀 있고...

전문가4: 너무 감성적으로 하지 마셔라.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표준 교안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각각 또 장애 당사자 선생님들이 각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내고 싶어 한다는 걸 좀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물론 개인 스토리텔링이 아예 빠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과 어떤 공식적으로 교육 과정 중에서 습득하시는 정보가 서로 이렇게 잘 교집합이 돼서 어우러져서 선생님들이 어떤 너무 감성적이거나 그런 교육과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2) 교육 목표의 가치를 방해하는 요소

교육 목표의 가치를 방해하는 요소로 ‘모호한 교육의 정체성’, ‘교육 품질에 대한 부진한 담보’, ‘강사로부터 담보되기 어려운 교육의 목표’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혐오와 배제’가 나타났다.

(1) 모호한 교육의 정체성

① 교육을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교육대상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고용확대, 탈시설 등의 사회통합으로 교육을 받아들이기보다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고용확대, 차별금지, 통합교육의 완성 등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방해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전문가3: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화 되는 차별을 금지하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통합 교육을 완성하거나 탈시설을 완성

하는 쪽으로 CRPD의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

② 모호하게 설정된 목적과 목표로 야기되는 괴리

인식개선교육의 목적이 모호함을 지적하고, 목적에 따른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 목표와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2: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행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략) 막연하게 인식개선 교육 그러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전문가3: 인식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장애인을 차별 없이 고용하거나 통합고용하거나 지역사회에 사는 거일 텐데 (중략) 인식개선 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다.

③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정책의 괴리

장애인식개선교육과정이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내용이 속도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지 못하는 것이 방해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전문가4: 현재 시대에 맞춰 어떤 사회적·문화적 상황들을 좀 잘 캐치를 해내서 그 교육 과정에 항상 반영해야 하고 변화를 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는가가 조금 의문점 이긴 합니다.

(2) 교육 품질에 대한 부진한 담보

① 검증할 수 없는 교육 효과

전문가들은 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전문가3은 유치원·학교 등의 교육기관의 학생 대상의 교육은 현장 피드백을 통한 효과성을 확인하기 용이하지만 고용과 관련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전문가4는 사업장의 교육 대상자는 법정의 무교육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정책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교육 참여자의 대상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종류에 따라 교육

효과를 확인 가능 여부가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3: 학교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치원한테 강의할 때는 어떻게 효과가 있고 이런 효과성들은 금방 금방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개발원에서도 기관에서 이렇게 인권교육을 했으면 3년 뒤에 장애인 고용이 늘었는지 장애인 당사자분들한테 조사해서 좀 더 차별이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효과성에 대한... 지금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전문가4: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로자들 대상으로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하죠. 장애인식 개선교육 말고 다른 법정 의무교육도 있고 법정 의무교육이 하나하나 다 추가된 상황에서 어쨌든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반영하면서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②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법정 의무교육

전문가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점검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위치가 교육 참여자의 참여를 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고 바라보고 있으며, ‘직장인 대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보다 교육을 미이행하거나 교육에 불참했을 때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진술하였다.

전문가1: 얼마나 잘 참여했냐 하는 참석률 이런 것도 조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참석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제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질적인 부분으로 하면 굉장히 그런 그것들이 담보되지 않아서 방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이어서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향상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3: 왜 이렇게 인식 개선 교육이 잘 안 되냐.. 우리가 인식개선교육을 안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언론의 감시를 받거나 소송을 걸지 않죠. 이제 곧 소송이 걸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법정인 교육이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좀 더 장애인 당사자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많은 무기가 되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기관에서는 그냥 업체가 벌금 내고 말지 그 사장님이 실적으로 개인 돈을 내거나 그걸 불참했을 때 불이익이 없거든요. 승진해서 누락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약한 부분이 있고..

(3) 강사로부터 담보되기 어려운 교육의 목표

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최대의 가이드라인화

강사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가이드라인을 최소가 아닌 최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수행 주체가 최소한의 강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제작·배포한 표준강의안으로만 강의하는 강사들의 역량에 대한 아쉬움을 의미한다.

전문가3: 우리가 전문 강사를 기를 때 좀 실력 있고 좀 더 인권적으로 실천을 담보하고 하기 위해서 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개발원에서 설명서 만들고 할 때도 '최소한의 기준을 이것만 지켜다오. 이것만은 꼭 얘기해야 해' 이런 지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강사들을 기를 텐데... 그게 최소의 가이드가 아니라 최대의 가이드가 돼 버린 거죠.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다 이제 강사들의 설명서와 모니터링에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② 장애인 강사 진입을 방해하는 강화된 강사 요건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강사로서의 활동은 장애의 긍정성을 전달하고 삶의 경험을 통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강사로서의 진입조차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문가1: 저는 이제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이제 복지부도 그렇게 될 텐데 점점 자격증화되면서 탈락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사실 제가 이제 직장내인식개선 교육을 봤고 심사도 좀 들어가 봤었는데 진짜 제가 아무리 장애인 당사자에게 접수를 줘도 이게 탈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을 암기해서 발표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전문가3: 우리의 명분을 전문성을 없애는 것들을 잘 (하지)못한 강사들은 자격을 박탈하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장애인 강사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가 지금 요구한 만큼 되어 있고 연구가 되어 있는가

(4)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혐오와 배제

① 부정적 편견을 부추기는 미디어

현재 미디어로부터 노출되는 장애는 ‘불쌍’, ‘안타까움’, ‘혐오’ 등 부정적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는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적 관점’,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장애학적 관점의 인식개선교육의 방향과 대치됨을 알 수 있다.

전문가3: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주고 기존 미디어나 유튜브들하고 kbs mbc 이런 분들에게 불쌍하고 안타깝고 감동적인 콘텐츠 말고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고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봐 라고 해서 제작비를 투자하고 거기에 상을 줘야 되거든요. 미디어들은 그렇게 개발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투자하는 건 없다는 거죠.

전문가4: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해 주요 요소로서는 미디어적인 상황들 특히 흉악 범죄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어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사회적 구성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습니다.

② 노출되지 않는 미디어 속 장애

전문가3은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장애’가 노출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를 인식개선교육의 미약함으로 드러내었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식적 기구의 부재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이는 미디어 속 배제로 인식개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여전히 미진함을 의미한다.

전문가3: 우리 드라마에는 왜 장애인이 한 명도 없지 장애인 작가가 한 명도 없지 이제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식 개선 교육은 아직 끝까지 가기에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아까 미디어의 약점을 보완하려면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기구들이 장애인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YMCA나 장애인권익연구소에서 일부 하시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사회적 파워를 갖고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거든요.

또한, 민감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언론은 성차별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성차별 방지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지만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다룰 때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학대사건 등이 발생할 때 감시할 수 있는 도구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3: 감시해야 할 언론들도 여러 가지 지금 전문가들에 의한 또는 특수교사들에 의한 부모들에 의한 학대 사건을 다룰 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가를 안 따져봅니다. 아까 인지도 면에서는 전달 체계 교육의 전달 체계에서는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이게 법정 교육으로서의 도구... 이거를 제대로 교육했는지 감시할 수 있는 도구들을 볼 때는 언론들은 사실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실은 성차별에서는 성차별 방지 교육을 똑바로 들었는지 이수했는지 점검하잖아요. 하지만 장애 학대 사건에서는 그건 점검하지 않거든요.

3) 바람직한 방향

바람직한 방향은 ‘의무적 참여 강화’,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 ‘교육 전달체계로서의 강사 역량 강화’로 나타났다.

(1) 의무적 참여 강화

① 변화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당위성을 위하여 전문가들은 교육 제공자 및 대상자가 목적에 맞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전문가1은 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의식변화를 장애학적 관점이라고 보았고, 전문가2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교육 제공자 및 대상자 등)이 교육을 통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필요성과 인지도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1: 인권은 어쨌든 서구에서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이런 공동체 의식...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지... 목적하고도 관련이 왜 있는데 다들 이게 이제 어쨌든 장애인에게 좋은 교육, 장애인을 위한 교육 이렇게 생각할텐데... 저는 그거를 바꾸는 게 사실은 장애학적 관점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전문가2: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장애인 당사자도 (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고 교육을 받는 참가자도 내가 이 교육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는 생각들을 좀 못하는 것 같은 그러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교육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걸 전달하려는 의지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중략) 그러면 필요성이나 인지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② 꼭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의 이미지 확보

인식개선교육이 범정의무교육을 넘어 꼭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함을 진술하였다. 실제로 국내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기 전에 범정의무교육으로 일률적으로 실시되기 시작(박승희 외, 2022)하였으므로 교육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으로서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1: 장기적이고 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은 이 교육을 받는 사람도 내가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 부분 하나하고요.

③ 권력자가 참석하는 교육

전문가 집단이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꼭 들어야 하는 교육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결과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집단에서의 결과와 연결된다. 강사집단에서는 교육 대상 기관의 대표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공감 정도가 낮은 점을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았다. 집단 내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참여에 대한 인식을 ‘꼭 필요한’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3: 전문가 집단이나 사회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범정 연수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사실은 대통령실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국회 정당들이 국회의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이거 꼭 듣자’ 라고 하는 사회적 기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들이 지금은 제일 정치적으로 필요한 기재인 것 같습니다.

(2)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

① 정보 전달 형식에서 벗어나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정보 전달 형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여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 여성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비교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지식전달 형식을 벗어나 사회과학적 논리와 설득이 필요하고 다학제적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교육 방식이 단편적으로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형식에서 벗어나(백영은 외, 2021) 다방향적인 교육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3: 우리가 여성인권교육을 할 때 여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지는 않죠. 근데 왜 장애인권교육은 장애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우리가 압박감을 느낄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왜 좀 고민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 될 거야.' '왜?', '150살까지 살 거니까'.. 인구학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0.7인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한테 투자하지 않으면 누가 노산을 하고 누가 난산을 하겠어요. 장애인 낳기가 다 두려워하는데... '장애인 낳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출산율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장애인권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사회과학적 논리와 설득이 돼야 되는데...

전문가1: 장애학 장점은 다학제적인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제 장애가 이제 어쨌든 복지 중심으로 가는 사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인문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을 접목해서 이걸 어떻게 인식을 바꿔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당위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② 그럼에도 삭제하지 못하는 정보 전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의료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어 기본적인 지식 정보 전달을 교육 커리큘럼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드러났다. 실제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사회적 구성주의적 입장을 드러내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개별적 유물론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4: 저희가 최근에 또 그냥 다른 기관이랑 협업을 하다가 제가 보육진흥원에서 일반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냥 짧게 장애의 개념이랑 그 다양성에 대해서 짧게 그냥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이제 더 충격적으로 느낀 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적 관점에서 '비장애인들은 일반 대학생들은 바라보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과정에 어떤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적인 정보 전달을 아예 빼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다시 또 시작을 하긴 했어요.

③ 변화하는 장애 개념 속 개별화된 접근

장애학적 관점에서 장애를 변화되는 개념 속에 개별화·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며 장애를 특정 예절로 규정 짓는 것에 경계하고 있다. 장애를 규정 짓는 것이 아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성의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15개의 장애유형이

나 예절(에티켓) 등에 대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술한다. 사회통합의 전제는 ‘장애’를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아야 개별화된 맞춤형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가2: 장애학적 관점으로 저는 바라봤을 때 이 장애라는 게 변화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개별화 서비스가 필요하고... 장애를 특정 예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면 사람은 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런 서비스나 혹은 내가 접근을 못 하는 거에 신경 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걸 더 의식할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4: 개별적 모델이라는 게 개인적 그게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로 돼야 한다는 얘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애 유형이나 장애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이제 추세를 맞춰서 가는데요. 이제 그래서 개발원 교육받을 때 요즘에는 뭐지 15개 장애 유형을 설명하거나 혹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예절 이런 걸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규정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올바른 장애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④ 다양성 존중을 포함하는 교육

전문가들은 다양성은 차이를 존중하면서 평등하게 나아갈지에 대한 제안과 장애를 지식정보 수준을 넘어 다양성을 내포하는 인권적인 측면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장애’는 손상 그 자체로도 다양성을 띄고 다른 소수성, 즉 동성애, 다문화, 여성, 아동 등의 교차성으로 다양성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 존중이 교육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전문가1: 우리 공동체가 더 바람직하게 나아가는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다양성 존중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성 쪽도 고민하지만 사실은 여성보다 (중략)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차이를 존중하면서 또 평등하게 나갈지 하는 부분을 제안하는 이런 것들이 꼭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4: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장애에 대한 어떤 지식적 정보 수준에서 아는 것보다는 어떤 장애가 가진 다양성 그리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전문가4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감성보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몇짐을 나눌 수 있는, 즉 개별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4: 장애인식개선교육도 ‘힙’하게 가야된다. 힙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어떤 개성이 있고 멋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콘텐츠 방향성을 잡고 할 때도... (중략) 기쁨, 동정심, 슬픔, 따뜻함 이런 감정보다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누구나 다 멋지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멋짐을 좀 나눌 수 있는 좀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내용에도 그러한 개별적 다양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사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돼야 되지 않나 싶고...

⑤ 단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 성과 기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시행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교육 연차별로 단계적인 교육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궁극적인 교육 목표가 ‘장애인 고용 확대’ 이므로 단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장애이해와 근로 과정 속에서의 사례 공유 등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3: 1년 차는 인식개선을 했으면 2년 차는 그 인식개선을 교육해서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할 건지 장애인을 고용해봤더니 갈등이 생기고 업무 부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 갈등과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과정에서 어떻게 업무 부담을 차별 없이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사례 중심적이고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인식개선이 차근차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3) 교육 전달체계로서의 강사 역량 강화

① 강사의 역량으로 담보될 수 있는 강의 품질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진술하며 교육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준비한다면 장애의 다양성, 인권에 관한 측면에서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을 진술하였다.

전문가4: 정말 강사 선생님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들이 정말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충분히 사전에 교육 대상들을 교육 대상들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예를 들자면 기본적인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면은 일회성 그러니까 강의식 교육 그 시간에는 충분히 어떤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어떤 인권에 관한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와 같은 강사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 강의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

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강사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강사의 강의안, 강의 시연 영상 등을 관계 부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수행기관의 기관 인증 및 유지를 위한 도구로 작동하고 있어 강사 차원의 강의 품질을 위한 견제 도구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4: 그러한 좀 강의의 질에 있어서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책을 또 하는 입장에서 강의 모니터링이 돼야 되거든요.

② 교육 주체로서 드러나는 당사자성의 체화

전문가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장애의 긍정성과 그에 따른 인식을 당사자 삶의 경험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1: 내가 내 삶 속에서 겪은 부분들을 이 사회 문제로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 라든가 예를 들면 나의 긍정성, 장애의 긍정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그거를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실은 장애인 당사자가 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강사활동은 불편함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진술하였다. ‘보여주기’를 교육의 접근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당사자의 경험을 드러내어 장애의 긍정성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정보 제공보다 중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문가2: 경험들 자체가 대단히 사람들의 생각을 ‘아 이게 불편하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제가 업혀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수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당사자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용이 어렵고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1: 멋진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 플러스 아까 000(전문가2)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것이 이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경험은 당사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000(전문가2)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메시지만 던져주고 와도 사실

은 여러 가지 것들의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③ 전달체계로서 확보되어야 할 장애인 당사자의 진입

전문가1은 장애인당사자의 강사 활동이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채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전문가1: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활용하기 어려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장애인 당사자의 메리트를 다들 못 느끼고 당사자들도 느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에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식개선 강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문가3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우선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강사 선발 과정이 중증장애인에겐 진입 장벽을 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였고, 전문가1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소속의 장애인 당사자 강사 할당률에 대해 비율 조정을 제안하였다.

전문가3: 지금 전문 강사나 법조인 강사를 뽑을 때 사실은 기술적으로 기능이 뛰어나고 인식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은 이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나, 그래서 점점 기술이 뛰어나고 효과성이 뛰어난 강사들을 뽑다 보니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장애인들이 강사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더라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 장애학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데 여성들은 참여 못 하고 오히려 남자들이 참여하는 결과가 되는 꼴이거든요.

전문가1: 지금 50% 장애인 당사자가 할당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이면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000(전문가4)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서가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그럼 왜 반반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100%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사실 그게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러니까 저는 장애학적으로 하려면 사실 이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제 형식이랑 다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진입에 대한 고민도 두드러진다. 전문가3은 정신적장애인의 강사활동 참여율이 의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동성애, 다문화 등 이중적 인권을 가진 당사자의 진입점이 낮음을 지적하며 교차성을 띤 새로운 장애유형의 등장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협업강의를

제안하기도 한다. 전문가2는 교육 형식에 대해서 발달장애 당사자의 체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장애-비장애 강사의 협업을 제안한다.

전문가3: 우리가 중증장애인을 뽑는다고 하지만 발달장애인분들하고 정신장애인분들은 그래도 참여율이 의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소수성을 가진 장애인, 동성애이신데 장애인이시거나 다문화인데 장애인이시거나 또 이런 이중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분들의 진입점은 과연 높은 것이냐는 부분들 그리고 늘 매년 새로운 장애 유형이 첨부되는데 그럼 그 새로운 장애 유형의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또 우리 콘텐츠의 진입 장벽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많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전문가2: 약간 법률적으로 이런 걸 좀 고쳐서 협업 강의를 의무적으로 하면 어떨까 되게 파격적인 얘기인데요.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이 같이 협업해서 장애인 당사자는 자기 경험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 발달장애인도 어려운 내용이나 이런 거는 비장애인이 설명을 하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인식개선에 되게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④ 병행되어야 할 교육 기관의 변화

강사의 장애긍정성을 인식하고 교육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관의 변화가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장애인 중심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계획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전문가3: 더 장애학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 당사들에 뭔가 좀 더 주체적이고 프라이드를 줄 수 있는 교육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계적인 어떤 법적 계획이 좀 필요하다.

전문가1: 어떻게 지원할지 하는 부분이 뒤에 이제 교육 기관의 전문성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개발원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용공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비장애인 중심의 어떤 암기 방식의 강의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교육 기관에 속한 전문가3은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전달체계 입장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강사양성의 방법을 다양하게 두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스템적인 체계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을 이야기 한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강사양성)교육전달체계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3: 우리가 강사들을 길러내긴 하지만 이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전달하

려면 교육(을) 전달하는 전문가들이 인권 교육의 전달 체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중략) 사실은 우리는 전달 체제가 과연 당사자들이 교육했을 때, 비장애인들이 교육했을 때 또는 협동 교육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전문 기관들이 강사들을 길러냈을 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일반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강사 중에 장애인 인권 교육을 더 트레이닝해서 뽑는 게 더 효과적인지..

4) 또 다른 인식개선의 도구, 콘텐츠의 변화

또 다른 인식개선의 도구, 미디어의 변화로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개발’, ‘장애가 포함된 미디어와 언론’ 으로 나타났다.

(1)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개발

①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전문가1은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개발·제작을 위해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개인·집단 등 미디어 콘텐츠 개발자를 발굴하여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된 미디어 콘텐츠는 인식개선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전문가1: 복지부에서 하고 있지만 (중략) 이제 문화 쪽에서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거를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가1: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원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생적인 조직들 아니면 개인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보면 연결해 주는 연결망을 사실은...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담당자가 내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설명을 보고서 선택할 수 있는...

② 미디어 콘텐츠를 접목한 교육 방식에 대한 고려

전문가1은 다양한 소재의 미디어 콘텐츠를 접목한 교육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진술하였다. 강사의 정의를 강사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장애 관련 문화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사람도 포함 시키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가 미디

어 콘텐츠를 접한 후 논의를 함께 나누는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교육 방식에 대해 기존 시스템을 확장하는 제언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1: 강사라고 하면 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지금 장애계에서도 많은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콘텐츠를 가진 사람을 초빙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가서 보거나 하는 이런 방식들이요. 이렇게 열려 있는 콘텐츠들을 예를 들면 유튜브들도 될 수도 있고 책을 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길에서 찾아갈 수 있는... 지금같이 이제 그냥 엮매어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콘텐츠를 이미 개발되고 있는 많은 좋은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가면 굉장히 지금 장애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중략) 어떤 영화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극을 본 다던가 그걸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본다던가...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2) 장애가 포함된 미디어와 언론

① 다양한 미디어에 등장해야 하는 장애인

전문가들은 미디어에 포함되어 등장하는 장애인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미디어에 장애인이 출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형성되길 바라는 의견과 함께 대중적인 미디어 콘텐츠 중 하나인 예능에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제작자들이 장애인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문가2: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데 장애인이 나오면 이게 지워야 되는 게 아니라 (중략) 드라마나 이 콘텐츠에 당연히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3: 저는 개인적으로 '나 혼자 산다'의 장애인이 안 나오는 이상 인식 개선은 어렵다. 그리고 '여행 지금 쏟아지고 있는 여행 프로그램에 왜 장애인 여행자는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하는 PD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아무 효과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인권교육을 잘해도 미디어가 관심을 안 가지면 설득이 안됐다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지금 인권교육을 잘했으면 방송 PD들이 '왜 계속 비장애인만 나오지', '전 현무보다 혼자 사는 장애인이 더 많은데...' 그런 인식을 가지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중적인 미디어를 어떻게 만나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을 줘 줄 것인가 인권 교육이 그런 고민이 왜야 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② 민감한 언론으로 위치

부정적인 이미지의 언론과 미디어를 긍정적인 언론과 미디어를 변화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를 공식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디어가 부정적인 편견을 부추기거나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것을 감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언론으로서 위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가3: 우리가 ‘언론이 문제다’, ‘미디어가 문제’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럼 좋은 언론이나 좋은 미디어가 뭔지 감시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모니터링 기구를 공식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3.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심층 면접 분석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강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 28개의 개념과 9개의 하위범주 및 3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상위범주는 ‘인식개선교육의 현실’, ‘교육을 어렵게 하는 구성 요소’, ‘올바른 교육의 변화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7>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심층 면접 분석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식개선교육의 현실	교육의 필요성	장애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교육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은 교육으로 해결
	대상에 맞춘 교육	학령기 대상에 맞는 미디어 활용과 지역 등을 고려한 내용 변화
		성인 교육은 업종에 따른 내용 변경 및 기술 필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	다름이 삶의 가치 차이로 나타나지 않기
		장애학 관점의 감수성 강화와 사례로 구성
고정관념 변화 방법으로 당사자 체화 사례가 효과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지 않는 통합적 교육		
교육을 어렵게 하는 구성 요소	형식적인 의무교육	교육참여자의 교육에 대한 인지 정도와 다양한 반응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
		교육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 교육참여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낮은 공감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강사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질과 내용
		다양한 장애 유형의 강사 확보 어려움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의 장소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에 부족한 시간	

	현재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내용	현실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강의 콘텐츠
		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 선택의 어려움
		의료적 모델을 강조하는 수행기관과 사회적 모델을 강조하는 강사의 정체성 차이
		매뉴얼화 하기 어려운 체화된 경험
올바른 교육의 변화와 방향	전문성이 필요한 강사	전문적인 양성과정 이수
		자격증 도입에 따른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등 역량 강화에 따른 전문성 향상
	강의 품질 개선	다양한 강의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
		모니터링으로 강의 품질과 강사 역량 확보
		전문가 윤리
	다양한 교육 방법	공감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례
		교수법의 다양화

1) 인식개선교육의 현실

인식개선교육의 현실로는 ‘교육의 필요성’, ‘대상에 맞춘 교육’, ‘교육 내용’ 으로 나타났다.

(1) 교육의 필요성

① 장애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교육

사회에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 저항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강사1은 장애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장애 운동이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 장애를 나타내기도 하고, 장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장애를 나타내기도 한다. 강사4는 이러한 장애를 나타내는 교육에 장애 당사자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낯선 사람이 아닌 익숙한 사람으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강사1: 누군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시위를 하고 ‘장애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문제가 뭐니 바꿔달라’라고 목소리를 내고요. 또 누군가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법에 대한 공감을 위한 또 이야기 나눔은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중략) 그렇게 되면서 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같은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어자를 늘려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사4: 교육의 필요성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교육 내용 보다는 장애인을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②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은 교육으로 해결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의 인식개선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의 인식들은 교육을 통해, 사례를 예로 들어 전달함으로써 인식개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강사1: 저는 제가 교육을 하는 걸 계속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장애인 인권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다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다 보니까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로 통해서 전달을 한다면 분명히 효과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 대상에 맞춘 교육

① 학령기 대상에 맞는 미디어 활용과 지역 등을 고려한 내용 변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이론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참여자는 미디어나 동화 등을 이용해 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강사3은 '엘리멘탈'을 예로 들어 서로 다른 사람의 섞일 수 없는 대립 관계를 이해와 존중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장애와 연결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강사4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뽀로로'의 크롱을 예로 들며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과 연계한다고 하였다. 강사5는 동화를 예로 들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교육 내용은 지역에 따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사3: 물하고 불하고 나왔던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그러니까 어린이가 없으면 잘 보시지 않는데 그 엘리멘탈이라는 소재 안에서도 장애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섞일 수 없는 물과 불이 결국은 존중과 서로에 대한 그러한 뭐죠 응원으로 인해서 결국은 섞여 들어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장애와 비장애라는 그 두 집단이 섞여도 존중이라는 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섞여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활 속의 그런 미디어를 저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4: 지금 옆에 꼬맹이가 하나 있긴 한데 8살인데 크롱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의할 때 그래서 8살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크롱이 크롱크롱 하는데 뽀로로와 친구들은 어떻게 크롱이 이야기를 알아들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조금 깜짝 놀랐는데 8살이 나올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놀랐거든요. '크롱한테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크롱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미디어 같은 것들을 교육 내용에 많이 활용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미디어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5: 초등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 좀 낮아질수록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좀 이렇게 넓게 보는 편인데 다양성에 대한 수용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제가 접근을 하는데 가끔 '깜장 병아리'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깜짱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재네 병아리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다 병아리아 이렇게 인식하고 같은 노랑색임에도 불구하고 참외 계란 이런 거 노랑색이 각각 다르다.(중략) 그러면은 이제 저기 농촌의 다문화 가정이 많은 데서는 굉장히 신기한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고 자기 병아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지역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촌에 가서 '깜짝 병아리' 했다가 실패했어요.

② 성인 교육은 업종에 따른 내용 변경 및 기술 필요

교육의 진행을 원하는 성인 대상자들의 업종은 다양하다. 다양한 업종에 맞추어 그 내용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강사1과 3은 교육대상 기관에서 교육의 내용을 특정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교육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내용과 꼭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강사1: 몇몇 분들은 또 어느 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우리는 이런 교육 말고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의 방법이나 에티켓을 조금 더 알려주면은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대상자분들의 요구, 교육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 니즈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3: 정말 업종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맞아요. 에티켓 넣어주세요 하면 그냥 에티켓 넣는 척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그냥 이제 쪽 제 이야기를 들고 나서 이제 어떠신지를 먼저 물어보고 이제 본인들이 느꼈던 그것이 에티켓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3) 교육 내용

① 다름이 삶의 가치 차이로 나타내지 않기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때 ‘장애인’ 과 ‘비장애인’ 을 언급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용어의 언급만으로 구분 짓기로 비추어질 수 있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교육이 원하는 목적은 아닐 거라고 강사1은 진술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각자의 삶이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강사1: 장애인 비장애인 이 용어 자체가 하나의 구분 짓기에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는 결코 이제 생각을 안 해서 안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용어가 구분되고 그런 용어들이 일상에서 더 많이 쓰여지게 된다면은 이걸 우리가 바라는 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어떤 목표 효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분짓기의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더 잘 구체적인 전달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장애로 인한 다름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장애로 인한 어떤 다름 어떤 다름 삶의 모습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장애라고 하는 다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은 또 같음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교육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② 장애학 관점의 감수성 강화와 사례로 구성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학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사1은 교육에서 장애 자부심과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도움이 되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 전달하며, 그 사례를 통해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사3은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예를 들며 어우러져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진술한다. 강사5는 장애학 관점이 아닐 경우 인식개선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은 장애학 관점의 인식개선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강사1: 장애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들, 또 장애학에서는 장애 자부심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게 된다면 긍정적인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존중, 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 이런 내용들이 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로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장애 문제에 대한 공감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

성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강사3: 다양한 당사자와 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학생들은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선생님과 제가 아주 격이 없이 뭔가 정말 이야기를 나눠가고 서로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깨워지는 것 같아서 굳이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한 거는 흔한 예를 들자면 우리 신체 부위를 이용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신체 부위 안에서 한 글자로 된 부위를 우리 찾아볼까? 이제 어른들도 똑같죠 한 글자로 된 신체 부위를 찾아봅시다. 눈 코 입 귀 똥 오만 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고 차이 있는 기관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딱히 제가 차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서 굳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강사5: 장애학적 관점의 강의가 아닐 경우 인식 개선 교육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정말 장애학적인 관점이어야만이 달성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하여 얘기하면 이게 전문성의 문제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올 거지만은 이게 결국은 관점의 문제 감수성의 문제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③ 고정관념 변화 방법으로 당사자 체화 사례가 효과

고정관념의 인식변화를 위해 당사자의 경험을 체화한 사례가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법적으로 교육에 포함해야하는 사항들도 있지만,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전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사1: 우리 대상자들도 그 사례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 특성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법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꼭 넣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씩 수정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교육을 할 때 이걸 꼭 넣으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강사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내용을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넣고 사례를 넣고 해서 살을 붙여나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④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지 않는 통합적 교육

장애를 잘 알지 못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인식개선교육은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사1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전에 장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 강사3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식개선 교육은 필요하며, 모두에게 있는 권리에 대해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사1: 제가 이 교육 활동을 알게 되면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들었고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과 조금 더 자주 접했더라면 나는 장애에 대한 생각들을 더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을 건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사3: 장애인 또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들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사회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는 이제 노동의 권리나 또는 교육의 권리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당연히 그들도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이러한 교육은 필요하다.

2) 교육을 어렵게 하는 구성 요소

교육을 어렵게 하는 구성 요소로는 '형식적인 의무교육',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현재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내용'으로 나타났다.

(1) 형식적인 의무교육

① 교육참여자의 교육에 대한 인지 정도와 다양한 반응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지하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교육에 대한 인지 정도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진술한다. 강사1은 주 교육 대상이 학교이므로 학생의 경우 호응도와 관심이 있으나, 교직원의 경우 낮은 관심도와 시간 배정의 어려움 등으로 교육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신분으로 교육을 듣고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강사1: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기관은 학교가 되는 거고 또 공공기관도 많이 나가는데 그 의무 교육의 대상자분들은 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 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낮설어하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요. 학생이라든지 일반 공무원분들 의무 교육의 대상자분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중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나 관심도도 조금 높은 모습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교육에 있어서 제일 큰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은 교육 시간에 있어서 제일 시간 내기가 힘든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교육을 들으신 다음에 학생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②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

인터뷰 참여자들은 교육참여자들이 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지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대체해도 되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식개선교육이 교육대상자의 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 ‘형식적인 교육’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대상자는 비대면 교육이나 교육자료 등으로 대체해도 무방한 교육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식개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보다 범정의무교육으로서 수료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사1: 교육에 대해서 진짜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 ‘형식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든 시간을 내어서 이 교육을 듣는 게 되다 보니까 진짜 큰 관심이 없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인식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3: 효과는 제가 저희 남편한테 물어봐도 ‘효과는 별로 없다.’,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그게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러주면 안 돼?’ 하니까 벌써 동영상으로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불러줘’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강사4: 대면 교육에 있어서 꼭 해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다 내려왔고 학교나 기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인지도는 올라갔지만 현실은 인지도만 올라갔지 직접 강사를 불러서 대면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줌이나 방송 교육을 통해서 교육하는 횟수를 저희들이 보면 물론 저희 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그냥 동영상으로 보고 영상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게 느껴져서 교육에 있어서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도 교육을 들어봤지만 그 교육 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③교육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 교육참여자

법정의무교육의 수가 많아지면서 교육 참여자가 어떤 유형의 교육이 진행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교육에 참여하여한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명칭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명칭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에 교육대상자 중에는 ‘장애인 교육’으로 알고 있는 대상자도 있다고 진술한다.

강사5: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의 정확한 명칭을 알지는 못해요. 그냥 ‘장애인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뭐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법정 의무 교육 그러니까 이 지금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법정 의무 교육하고 묶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의 명칭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참여자가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④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낮은 공감도

학교의 장이나 기관, 기업의 대표 등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공감도가 낮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기관의 장이나 대표의 공감도에 따라 교육의 참여나 관심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강사1: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 장애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많이 높아져 왔지만 또 최근에 또 사회에 또 높은 자리에 분들이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장애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엄한 그런 또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다른 이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공감도가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더라고요.

(2)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① 강사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질과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많은 강사가 양성되었다. 강사 1은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의 낮은 전문성이 교육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진술한다. 강사3은 법정의무교육만을 전문으로 하여 1시간에 4~5가지 교육을 진행하는 교

육기관이나 강사가 존재하기에 교육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이야기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주목적이 아닌 상품 판매가 주목적일 경우도 있어 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인식개선교육의 효과는 교수자와 교수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전달하는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고 다양한 사례들을 전하는 강사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교육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사1: 강사들이 또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될 것 같은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어떤 장애 당사자들을 포함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또 활동이 있게 되면서 진짜 교육의 현장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육 신청을 받고 그럴 때 그 기관의 담당자분께서 저희 센터가 '교육을 많이 했느냐', 우리 '강사분들은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 교육을 실시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강사가 장애를 가진 당사자거나 비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선천적 장애를 가졌거나 후천적 장애를 가졌거나 그리고 또 다양한 장애 유형 또 장애 정도의 차이 또 그 개인이 경험했던 장애로 인한 여러 일상의 경험들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정체성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강사 나름대로의 조금 해석은 차이는 있고 교육 진행 방법 내용에도 분명히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3: 짧게 끝내달라 아니면 1년에 한 번 받는 거니까 '대충 받는다'라는 그 모든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이런 센터가 생겨남에 따라서 사실 전문성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1시간 교육을 하고 나면 4가지, 5가지 의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다 짚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의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은가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도 보험회사에서도 보험 하나 끼워 팔고 10분 수업하시고 한나라는... 저희가 전화를 드릴 때도 '보험 파실 거 아니시죠?'라고 이야기하시는 사업장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중략)인식 개선 강사의 해석에 따른 교육 방법 의미는 강사의 정말 그 자질에 따라서 공감이나 감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② 다양한 장애 유형의 강사 확보 어려움

인식개선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 당사자 강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강사4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장애 당사자이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교육 요청에서도 드러난다. 교육을 신청하는 기관에서는 여러 유형의 장애 당사자 강사로

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미이다.

강사4: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고 있고 저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 강사들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라든가 청각장애, 시각장애에 대한 예시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무리 저희들이 유튜브를 보고 관련 장애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각 학교에서 의뢰를 할 때도 '지체 장애 말고 다른 장애 유형의 강사가 있으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달장애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솔직히 어려움이 따르고 파트너 강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파트너 강사를 구하는 것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③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의 장소

휠체어를 사용하는 강사의 경우 강의장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의 미설치, 고장과 파손 등으로 강의장 이동이 어렵거나, 휠체어와 함께 들러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가 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사2는 진술한다.

강사2: 대면 교육에서 있어서부터는 아무래도 지방이나 수도권도 똑같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걸을 수가 있어서 접근성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강사분들 같은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도 꽤 많거든요.

④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에 부족한 시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6조 3항)에 의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강사4는 이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잘못 전달 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 대상 기관은 1회, 1시간을 진행하므로 이 모든 것을 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강사4: 저는 현재 교육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애 감

수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괜히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고 저 역시도 장애인 당사자 강사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 현재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내용

① 현실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강의 콘텐츠

인터뷰 참여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강의 콘텐츠를 지적하고 있다. 강사3은 강의 내용이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강의에 방해요소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강사2는 교육에 쓰이고 있는 동영상의 질이 낮다고 이야기한다. 교육의 내용이나 영상 등을 최신화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양질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강사3: 그리고 이런 교육 내용이 이 커리큘럼 자체가 현실의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는 것 또한 방해 요소인 것 같습니다.

강사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영상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교육 퀄리티가 좀 옛날 자료들이 많아요. 요즘 바뀌는 트렌드라든가 생각보다는 거의 옛날 자료들 많아요. 어차피 해마다 교육을 들을 거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자료들이 항상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들이 좀 아직은 미흡하고 옛날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② 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 선택의 어려움

교육을 진행하면서 선택되는 용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강사1은 '장애인' 과 '비장애인' 에 대한 표현이 올바른 방법이나, 그렇게 구분되는 현상은 교육이 주는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강사3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며 장애가 있는 자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양성을 가진 여러 사람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며 인권으로 접근하여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강사4는 인식을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진술을 한다. 이처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용어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강사1: 장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건 좋겠지만 너무 어떤 장애에 대한 지식 이론적인 것들을 전달만 하게 된다면 여기에도 분명히 역효과가 생길 거예요. 요즘 제가 밖을 다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장애에 대한 교육을 듣다 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선생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어요.(중략)장애인, 비장애인으로 용어가 구분되고 그런 용어들이 일상에서 더 많이 쓰여지게 된다면은 이걸 우리가 바라는 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어떤 목표 효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3:장애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라는 질문 또한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장애라는 또 다른 나와는 전혀 다른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중략)장애인 인권에 대한 또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강사4: 사람은 누구나 걷는 모습을 보면 모습이 다르거든요. 발자국 때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휠체어를 타는 것도 걷는 방법과 모습이 다른 거다라고 이제 길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보는 방법과 듣는 방법이 다른 사람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이런 용어 자체에서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을 저희가 '개선을 할 수 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식을 조금 '전환'한다는 '전환 교육'이라든가 이런 용어들로 변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③ 의료적 모델을 강조하는 수행기관과 사회적 모델을 강조하는 강사의 정체성 차이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정체성에 따라 교육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정체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강사1과 4는 수행기관과 강사의 정체성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수행기관이 의료적 관점으로 교육의 진행을 원하지만, 사회적 관점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원하는 강사 간의 정체성 차이로 인해 교육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사1: 수행기관 교육을 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저도 국립재활원 손상 예방 교육 활동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립재활원에서 하는 장애 예방 교육, 손상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장애 관련 교육이 있고 이 손상 예방 교육에 대한 실제 어떤 활동이나 내용을 보면은 이 교육도 꼭 잘못된 교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에도 장애 예방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 맞지요? 수행기관에 따라서 이 장애에 대한 정체성 부분 해석의 부분은

달라질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사4: 수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체성은 강사들마다 다 달라 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수행기관의 정체성이 있다 하더라도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공감하고 있고요.

④ 매뉴얼화 하기 어려운 체화된 경험

장애 당사자 강사의 경우나 장애인 부모 또는 함께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체화된 경험들을 교육의 매뉴얼화 하기 어렵다고 강사5는 진술하고 있다. 체화된 경험도 다양하고 당사자가 아니면 전달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

강사5: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어저께 지하철을 탔는데 내지는 뭐 이래서 우리 주변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 사례들을 가지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얘기를 뽑아가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례는 시의성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지진 얘기를 하면서 장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3) 올바른 교육의 변화와 방향

인식개선교육의 올바른 교육의 변화와 방향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강사’, ‘강의 품질 개선’,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나타났다.

(1) 전문성이 필요한 강사

① 전문적인 양성과정 이수

인식개선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강사1은 ‘전문적인 강사양성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와 모르고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육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양성과정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강사1: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각자가 맞는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알고 있고 그걸 꼭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맞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의 교육을 진행하느냐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교육의 진행을 하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전문적인 양성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관이 되었든 강사가 되었든 올바른 장애에 대한 어떤 지식,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되는 거고요.

② 자격증 도입에 따른 전문성 강화

인식개선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얻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진술하고 있다. 강사2는 강사로 진입하는 장벽을 낮추자고 진술하고 있다. 누구나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여 강사가 되어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 당사자의 다양한 체화경험을 강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다른 의견으로 강사5는 양성과정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 강사의 자격만을 획득하여 교육의 목적에 이용하기보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강사2: 자격증이나 자격에 관련된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딱세게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거기 안에 전문가가 되기까지 기존에는 강사들이 새로 세팅하는 고객 교육을 통해 방법을 찾으니까 오히려 그 반대에서 역량 쪽에 세팅을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사5: 업체들이 하는 강의의 질이라는 게 엄청 떨어지고 있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본질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폐해 중에 하나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래서(중략) 자격을 강화하는 거하고 맞물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원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실제 교육하고 내용하고 맞달아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그렇지만 또 너무 느슨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거...

③ 보수교육 등 역량 강화에 따른 전문성 향상

전문적인 양성과정을 거쳐 인식개선 강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수교육, 역량 강화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강사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강사4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강의 기술이나 개정된 내용 등을 배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강사5는 교육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다양한 상황을 워크숍이나 보수교육을 통해 공유하면서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

강사4: 저는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강사들도 계속해서

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강의에 대한 실제로 강의할 때 쓰는 교육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교육이면 정말 좋더라는 생각을 하고 쪽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강사5: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한 번 올리는 바람에 선생님이 투입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저는 제가 다 커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던데요. 왜냐하면 '그 강의는 내 책임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려면 서로 공유되어야 되고 주기적인 워크숍, 보수교육 이것이 내용성 있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전문성과 관련해서 제가 해본 생각입니다.

(2) 강의 품질 개선

① 다양한 강의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

인터뷰에 참석한 강사1은 강의의 품질을 위해 다수의 강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사의 자격을 획득한 후 1년에 10회 이하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를 '전문 강사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한다. 강의의 횟수만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얻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강사1: 기관이 되었든 강사가 되었든 올바른 장애에 대한 어떤 지식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강사의 양성 자격은 취득을 했지만 1년에 50회도 안 되는 10번도 안 되는 그런 교육 활동으로는 절대 그분이 '전문 강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50회 100회 정도의 교육은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어떤 관련 노하우를 쌓고 그러면서 전문적인 내용의 교육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② 모니터링으로 강의 품질과 강사 역량 확보

연구참여자들은 모니터링과 강사 평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원하고 있었다. 강사1은 강의 모니터링을 통해 강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지 교육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한다. 강사4는 수행기관에서 강사를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강사의 역량 강화와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강사1: 기본적으로 올바른 내용의 전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수행기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강사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잘못된 정보, 잘못된 방향의 교육은 되지 않도록 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4: 강사들을 매년 수행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피드백을 들음으로 인해서 강사들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③ 전문가 윤리

강사의 전문성을 위해 많은 경험과 역량 강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 더해 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윤리도 언급하고 있다. 강사3은 양성과정을 통해 강사의 자격을 갖추어 ‘나는 전문 강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장애 당사자나 가족처럼 장애에 대한 체화가 많은 사람이 강사였으면 좋겠다고 진술한다. 강사5는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전문성 있는 강사라고 진술하고 있다.

강사3: (강사의)자격이 주어졌다는 이유로 ‘난 전문 강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근데 저희가 살면서 그러니까 당사자나 아니면은 당사자 가족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장애학적으로 보면 당사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또한 당사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현실에서 살아오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애기가 주고받아 진다라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강사였으면 좋겠다.

강사5: 제가 강사 양성 과정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훌륭한 전문성 있는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저는 될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감수성’이다. 감수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감수성은 절대로 불가역적이다.(중략)그래서 감수성 대한 매뉴얼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전문성과 관련해서 제가 해본 생각입니다.

(3) 다양화가 필요한 교육 방법

① 공감성을 높이는 다양화 사례

체화된 경험들을 매뉴얼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사례를 포함하여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강사2는 여러 장애 유형의 사람들과 음악 밴드를 만들어 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보여주므로 다양성과 관계성, 접근성 등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 강사3은 개인의 손상에 집중하기보다 사회적

인 환경에 집중하여 장애만을 다루는 교육보다 인권 교육으로 접근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강사2: 저 같은 경우는 다양성에 대한 차이를 제가 원래 음악을, 밴드를 했어서 밴드 영상을 보여드리기 시작을 해요. 밴드 영상을 시각장애, 발달장애인들이 연주했고 저는 노래를 하고, 우리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함께하는 이 부분이..(중략)전 차이와 다양성을 설명할때 제가 밴드 영상을 보여 줍니다. 밴드연주 영상에서 제가 보컬로 나오고 연주자들은 모두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이 연주를 한 겁니다. 연주자가 다르고 악기가 다르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연주하니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는 것 처럼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중략) 우리가 지금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들만의 차이가 비장애인들을 기존의 관점으로 바라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장애 관계성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런 그를 다양한 관점에서 방향이라면 이 교육 체계로 만들게 접근하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강사3: 본인이 가진 개인의 그런 손상도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 때문에 덜 힘들어지니 그것을 잘 접목하면 모두가 이제 좀 더 생활하기가 좋아진다! 편안해진다! 라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향이라서, (중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교육이 아니고 인권 교육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두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함께하다 보니까 나의 인권 너의 인권이 모두가 같이 이제 같은 곳을 보고 가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② 교수법의 다양화

인터뷰 참여자들은 교육 방법이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한다. 강사1은 영상을 제작하여 강의용으로 쓰기도 하고 홍보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휴지로 인형을 만들어 인형극을 연출하기도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사2는 코로나 19로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교육의 증가로 영상교육이나 방송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전달의 한계나 소통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강의 장소에 접근의 어려움으로 강의가 어려웠던 강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다양한 교수법으로 인식개선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강사1: 교육의 방법도 저희가 방법을 잘 찾아낸다면은 또 나름의 좋은 어떤 전달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느꼈습니다.(중략) 저희 센터의 다른 강사분들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목 밀으로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활동가분이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저희 센터에서 만든 토끼 모양 휴지로 토끼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휴지 티슈를 접어가지고 토끼를 만들어서 저희 센터 직원들이 손가락에 끼워서 각자가 그린 토끼를 목소리 출연도 하면서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진 토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강사2: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자연스럽게 줌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교육하는 방식이 물론 부족함도 있고 전달 방식이라든가 소통 방식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전까지는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강의를 못했던 강사님들에게 좀 더 강의할 수 있었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생각이 들고요.

4. 합의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문가와 강사들은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와 방해요소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을 다양하게 진술하였다.

우선,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재를 ‘특정대상에게만 의무로 인식되는 교육’, ‘측정하기 어려운 효과’, ‘의료적 관점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으로 나누어 현재 법정 의무교육으로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모호한 위치와 필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효과성과 함께 혐오·시혜·감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목표의 가치를 방해하는 요소로는 ‘모호한 교육의 정체성’, ‘교육 품질에 대한 부진한 담보’, ‘강사로부터 담보되기 어려운 교육의 목표’,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혐오와 배제’로 나누어 모호한 교육의 정체성과 함께 검증하기 어려운 교육 효과의 한계와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표준교육안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에 있어 최대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거나, 장애의 긍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애인 강사의 진입을 방해하는 강사 선발 요건에 대하여 교육의 목표가 담보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미디어 속에서 부정적 편견이 부추겨지거나 장애가 배제되는 것이 방해 요소로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방해 요소를 넘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무적 참여 강화’,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 ‘교육 전달 체계로서의 강사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교육의 의무적 참여 강화를 위해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꼭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의 이미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정보 전달 형식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장애 개념과 다양성이 교육 내용에 포함

되어야 함을 드러내었다. 또한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강사 역량의 담보, 교육 주체로서 당사자성의 체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강사로서 장애인당사자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기관의 역할 변화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함께 콘텐츠와 미디어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개발’, ‘장애가 포함된 미디어와 언론’ 으로 다양한 기회와 형태로 교육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다양한 미디어에 장애인이 등장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민감한 언론으로서 위치하길 권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인식개선교육의 현실을 ‘교육의 필요성’, ‘대상에 맞춘 교육’, ‘교육 내용’ 으로 나누어 교육은 장애를 나타내는 방법과 통합을 위해 필요하며 생애주기에 맞는 내용으로 다양한 삶의 차이와 장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감수성 있는 사례들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체화경험을 전함으로써 장애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 몰랐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교육을 어렵게 하는 구성 요소로는 ‘형식적인 의무교육’,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환경’, ‘현재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내용’ 으로 나누었다. 먼저, 교육참여자의 교육에 대한 인지 정도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진술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교육의 정확한 명칭을 교육 참여자가 모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공감도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인 의무교육으로서의 위치에 머무르는 것을 방해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강사의 전문성에 따라 교육의 질과 내용이 달라지고, 다양한 장애 유형의 강사 확보가 어려운 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의 장소,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에 부족한 시간을 꼽으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또한 방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어렵히는 구성 요소로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강의 콘텐츠, 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 선택의 어려움과 더불어 의료적 모델을 강조하는 수행기관과 사회적 모델을 강조하는 강사의 정체성 차이 및 매뉴얼화 하기 어려운 체화된 경험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의 변화와 방향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강사’, ‘강의 품질 개선’, ‘다양한 교육 방법’ 을 제시하였다. 강사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적인 양성과정 이수와 자격증 도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 품질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감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례와 교수법의 다양화 등 다양한 교육 방법 등을 제시하며 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초점집단면접 결과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구축에 필요

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 내용의 변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육 목적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한 장애학적 관점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양성에 대한 제시이다. 전문가들은 정보 전달 형식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장애 개념과 다양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는 손상 그 자체로도 다양성을 띄고 있으며 다른 소수성, 즉 동성애, 다문화, 여성, 아동 등의 교차성으로 다양성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다양성 존중이 교육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은 ‘다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다름을 수직적 차이가 아닌 수평적 차이로 이해할 때 장애에 대한 개념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성은 장애 개념을 전복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편견에 저항할 수 있는 내용이 탑재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질적인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 할 때 시혜와 감성에 머무른 교육 내용은 시혜적 존재를 넘어 두려움을 양상시키는 존재로서 장애인을 바라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인식개선교육에서의 지식과 정보 전달,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형식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손상과 장애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야기시킬 수 있는 의료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경계하고 이를 넘어 편견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내용이 탑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당사자의 체화된 경험(lived experience)을 콘텐츠로 하여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가 집단과 강사 집단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장애의 긍정성과 그에 대한 인식이 당사자 삶의 경험, 즉 체화 경험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강사 활동 속에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보여주기’를 교육의 접근법으로 활용하여 체화 경험을 드러내어 장애의 긍정성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정보 제공보다 중요하다. 물론, 체화 경험은 매뉴얼화 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체화 경험은 생활 속에서 예상보다 훨씬 빈번하며 경험의 빈도와 다양성은 매뉴얼에 모두 담아내지 못하

고 자칫하면 체화 경험의 스펙트럼을 좁혀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체화 경험이 매뉴얼화가 아닌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로 삽입될 때 정보전달의 효과를 넘어 기존에 사회가 규범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몸’에 의문을 품고, 차이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의 품질관리 강화

초점집단 면접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품질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으며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와 강사 집단 모두 기존 강사양성과정의 경우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강의 품질을 강사 역량에 기댈 수 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커리큘럼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교육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 내용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강사의 장애긍정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관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교육참여자의 수준별, 생애주기별로 교육커리큘럼의 구성·매뉴얼 제작 등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는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의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인식개선교육의 강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단순한 범정의무교육을 넘어 질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작이며, 두 집단 모두 강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강사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소속 강사의 강의안, 강의 시연 영상 등을 관계 부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수행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자격을 인증하고 유지하는 도구로 작동되므로 강사 차원의 강의 품질을 위한 견제 도구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강사 대상으로 자격 연장을 위한 보수 교육 참여, 강의 시연 영상 제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또한 자격 평가가 아닌 자격 유지를 위한 절차로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강사의 강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강사의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 교육과정의 점검, 강

의 시연 영상에 대한 평가 과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효과성 여부 등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강사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위치를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와 강사 집단 모두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식개선강사로 진입하기에 장벽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강사 선발과정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기술’ 적 심사를 중시하므로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 진입하는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현재 시스템은 장애 긍정성을 드러내는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전문가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강사 할당율에 대한 비율 조정, 교차성에 위치한 당사자에 대한 폭넓은 고려, 협업 강의 등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입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이미 진입되어 있는 장애인 강사의 강사활동을 위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한 도구로써 활용되는 콘텐츠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혐오와 배제를 지적하며 미디어가 부정적 편견을 부추기고 쏟아지는 미디어 속에서 ‘장애’는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 할 시스템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미디어와 언론에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정부 부처간 협력, 미디어 콘텐츠 개발자 발굴 등의 노력과 함께 이를 공유할 플랫폼이 개발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정의를 장애 관련 문화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고, 교육 대상자가 관련 미디어를 접한 후 논의하는 등의 교육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미디어 제작자들이 장애인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디어를 생산하고 이와 더불어 감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언론으로서 위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되는 등 미디어 콘텐츠가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V.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장애인식은 불평등한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평등한 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대부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의 자격을 기준하고 있어 장애를 의학적·기능적 접근에 입각하여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제한의 결과보다는 제한의 근원을 강조하고 선택 편향 문제와 활동 제한의 좁은 관점(Bernell, 2003, 조한진 외, 2017, 재인용)만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에 속해 함께 살고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고려하게 한다. 이에, 장애 개인적 초점의 인식을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환경으로 전환하는 사회정치적 접근법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법적 실천으로서의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장애인식교육은 90%(한국장애인개발원 집계)이상 참여라는 가시적 지표만 줄 뿐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되어져 오는지에 대한 인식변화지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식교육이 현재 실천해 주기를 요구하는 입장만 있을 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법을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장애에 대한 관점을 전략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에 대한 무인식을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저항하고 수직적 다름의 시각을 수평적 다름이라는 다양성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이동석 외, 2019). 이러한 목적에서 기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을 장애학 관점을 기반으로 재구성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가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문헌을 고찰하며 사회 내 편견과 차별로 인해 구조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장애 계층에 대한 교육모델과 정책제안 등을 확인한 바 장애 극복의 환상을 인식개선의 사례로 활용하는 등 왜곡된 장애개념을 양산할 가능성과 비장애 학생의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 편중을 목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차별화된 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에는 참여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영국과 호주 등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한계를 들여다보는 보는 동시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자료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 분석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와 강사 중심의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가이드라인 구축의 방향과 목표, 접근원칙 및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학적 관점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향성 및 목표

1) 방향성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1)관점, (2)실천, (3)정책,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1) 관점

사회에서는 장애관련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예를 들어 지적장애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지적장애로 보고, 장애인을 가두어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혹은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 이런 사회로부터 이데올로기적 비장애중심주의(ableism)는 장애를 지속적으로 저가화하고(devaluing) 장애의 존재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서 바라보는 관점의 우세함 때문에 일어난다(Campbell, 2001, 2009). 따라서 장애인식개선 및 제고는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장애인 본인의 관점과 경험이 중시되는 개인적 관점은 물론, 장애인의 참여와 해방적 연구의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적·문화적 방향의 관점을 추구한다. 나아가 정상성으로 억압하는 능력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기 위해 반문화적이고 비장애중심주의를 깨뜨리는undoing ableism(박승희 외 역, 2023)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실천

개인의 서사와 미디어에서 나타난 서사의 방향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당사자의 체화된 경험(lived experience)이 집단화 되기 위한 하나의 실천으로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서사가 필요하다. 장애는 개인적 불행이나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장애를 초래하는 사회·건축 환경의 산물로서 기술되어야 한다(조한진 외 역, 2019). 권력 관계를 바꾸고자 할 때 비판 혹은 비평적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판이론과 문화이론에서의 '주변'과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능력중심주의(ableism)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비평적 개념이 요구된다. 이에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와 문화적 세계를 만드는 동시에 그 세계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듯 상호교환의 장애서사의 실제와 실천을 제안한다.

(3) 정책

CRPD(장애인권리협약) 전문(v)에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인권의 포괄성이 삽입 되어진 장애인 권리보장증진을 위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법률제정이 요구된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장애인식교육은 인식전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정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는 인식개선교육이 적절한 도구로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고등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식교육은 각 법률마다 대상, 목적 등이 달라서 전달하는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나 특정 대상에게만 의무로 인식되는 현 시점에서 좀 더 미시적인 차원의 교육 효과의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행의 강제성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인간존재 가치의 기본에서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장애인식개선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의 역할로서의 중간자적인 인식의 정책 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개별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지하고 그 미시적 내용이 아닌 연구틀로서 접근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정책적 방향이 요구되어진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이론틀과 방법제안으로서 내용의 경계를 필요로 할 때 법적 원칙들에 따라 작동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천 분야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체계를 다지는 초석으로서의 중간자적 인식의 정책이 시급하다.

<표 18>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구분	장애인식교육의 개선 및 제고	장애인식교육의 전환
관점	개인적·사회적·문화적	반문화적·undoing ableism ⁹⁾
실천	개인의 장애 경험의 새로운 서사 보편적 장애 경험의 공감의 서사	비판이론과 문화이론 토대의 상호교환의 장애서사 ¹⁰⁾
정책	미시적·거시적 정책	미시적·거시적 사이 중간자적 인식의 정책

9) 박승희·양여경·한경인·이성아·양여경 역, 2023, 『비장애중심주의 넘어 _장애학 기반 장애이해교육』, Susan Baglieri·Priya Lalvani., 2019, Undoing Ableism: Teaching About Disability in K-12 Classrooms (Teaching about Disability in K-12 Classrooms), 서울: 피치마켓.

10) 조한진·손홍일·이지수·정지웅·강민희·최복천 역, 2019, 『장애 이론 : 장애 정체성의 이론

2) 목표

장애는 민주사회에서 모든 시민들이 기대하는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질문들을 상징한다(Siebers, 272-3).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누가 장애를 가지고 누가 결정하는가 등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목표를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잘못된 이해와 생각이 실제 장애인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는 장애화 및 사회적 실체화(비판이론)에 저항하고자 한다. 이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목표는 1.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이며 2.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4.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5.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 조성으로 총 5개이며, 교육목표별 세부지표는 CRPD 제8조(인식의 제고)의 세 가지 속성을 토대로 사회적 모델을 기반한 장애학적 실천을 지향한다.

2. 가이드라인 접근 원칙 및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앞서 우리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한다.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가.” (박승희 외 역, 2023). 본 연구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굳어진 답들을 해체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의 접근 원칙과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1) 가이드라인 접근 원칙

(1) 장애를 사회적 억압으로 구성한다.

개인의 경험이 감성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사회적 억압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개인의 서사와 미디어에서 나타난 서사의 방향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형식의 과거 교육내용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장애의 다양정보다 ‘어렵고 힘든’ 을 강조하는 것이 시혜적 존재를 넘어 두려움을 양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미디어로부터 노출되는 장애는 ‘불쌍’, ‘안타까움’, ‘혐오’ 등 부정적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는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적 관점’,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장애학적 관점의

화』, Siebers, T., 2008, Disability Theory, 서울: 학지사.

인식개선교육의 방향과 대치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고통이 아닌 사회적 억압으로서의 새로운 서사 개발은 물론 미디어 제작자들이 장애인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한다.

(2) 장애 긍정성과 자부심을 드러낸다.

장애인 당사자 강사의 경험 속에 장애의 긍정성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장애 이해 및 정보의 전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궁극적으로 분리가 아닌 통합을 지향하므로 교육이라는 인위적인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강사활동은 불편함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진술하였다. ‘보여주기’를 교육의 접근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당사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장애의 긍정성과 더불어 장애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3)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손상으로 인해 사회적 장벽을 경험할 때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위치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정보 제공보다 중요하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강사로서의 활동은 장애의 긍정성을 전달하고 삶의 경험을 통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4) 비장애 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한다.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모든 지식은 위치해 있고 사회적 위치에 밀착되고 체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iebers, 조한진 외 공역, 2019). 장애인식개선교육과정이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내용이 속도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지 못하는 것이 방해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함몰되어가는 장애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Susan Baglieri · Priya Lalvani(2023)는 장애를 “놀라운” 장치로 사용하는 자료의 의도적 이용을 주장한다. 이어서 그들은 장애와 장애인의 삶에 관한 어떤 가정과 잘못된 인식들에 관한 지속적 탐구를 주장하고 있다. 그 지속적 탐구의 핵심은 ‘생각·태도·이해·사회적 실제 사이의 연관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행본의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가.”

따라서, Susan Baglieri · Priya Lalvani(2023)는 비장애중심주의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벗기고 해체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도록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장애학의 목적인다고 주장한다.

(5) 장애인의 일상을 강조하는 체화된 경험을 드러낸다.

장애이해나 장애개념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참여자가 일상에서의 경험들은 변하지 않는다. 장애를 보편성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차별과 인권 침해의 존재로서 위치시키는 등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어 재생산되어지는 편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해소를 위해 일상성이 강조되는 장애인 당사자의 체화된 경험이 교육에 녹아들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의 긍정성과 그에 대한 인식이 당사자 삶의 경험, 즉 체화 경험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전달의 효과를 넘어 기존에 사회가 규범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몸’에 의문을 품고, 차이의 문제 제기와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재정의의 할 수 있을 것이다.

(6) 시혜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위치한다.

항상 장애는 개인적 비극으로,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고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장애도 고통도 개인을 구분짓지는 않는다. 장애는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는 사람의 외부에 있는 사회적 개입이다. 사회적 힘이 산물로 고통받는 것이 장애이다. 따라서 장애는 시혜와 배상의 존재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적 위치에 존재한다(조한진 외 역, 2019). ‘권리주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접근권과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한 편의시설 의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보조기기 등을 근거로 장애인들이 권리의 주체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7) 사회적 기여에 대한 재정의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성에 앞서 인간존재 가치의 관점에서 장애인식개선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의 역할로서의 장애(인)는 그 자체로 기여하고 있음이다. 장애자부심은 사회의 유형이든 무형이든 무언가 기여하게 될 때 생기는 것이므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며 찾아내는 것이 장애학의 실천이 된다. 따라서 장

애인의 삶을 드러내며 동시에 장애인은 도구화시키지 않는 콘텐츠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

(1) 장애 개념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하지만 현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나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지 않다. CRPD 전문(preamble)에 나타난 ‘장애’의 개념은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가 변화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의 환경적 장벽이 장애인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를 인간과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맥락으로 보고,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모델 관점으로 전환하여 제시해야 한다.

(2) 인간의 존엄성

장애인의 인권은 “시민권 법률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첨가물”이 아니라 그 완성을 위한 핵심으로 이해(조한진 외 역, 2019)되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살아낸 삶의 경험에 대한 존중은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존엄성이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일에 대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의문을 제기하고 불편하게 여기며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저항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3) 다양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상은 같아야 한다. 다양성은 보편성이며 포용이다. 장애인은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다양성의 한 영역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장애와 비장애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다양한 차이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수평적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적 특이성을 주장했고, 또한 장애인으로서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 농문화, 장애문화, 또는 장애 자부심(disability pride)을 말하면서 장애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한다. 다

름의 개념은 장애를 숨기거나 노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 또는 칭송할 것으로 봄으로써 장애를 다양성으로 접근하는 상징으로 이해하게 된다.

(4) 사회참여 사례

장애인의 사회참여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장애인 자립의 첫 단계는 탈시설과 전환이며, 전환(transition)이란, 익숙하지 않은 사회문화인지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과정이다(Cheng et al, 2015). 탈시설 과정은 주거지의 변화,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이용,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직업의 선택 등 새로운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탈시설이라는 경험과 심리적 변화는 전환의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다(이아영 외, 2023).

장애인의 자립사례와 관련 법과 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의 경우 50여 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탈시설을 추진하여 대형시설을 완전히 폐쇄하였으며, 거주시설이 해체되기 위해 수행해다 할 것들 중 전환지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The Ammam Project’가 수행된 바 있다(Ericsson, 2000).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2009년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시설을 폐쇄한 전례가 있으며, Host family제도, 지역생활 5개년 계획, 패스포트(Passport)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탈시설들 지원(우욱찬 외, 2019; Martin & Ashworth, 2010; Riordon, 2017)하고 있다.

(5) 통합사회 조성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경계와 범주를 전환시켜야 한다. 장애와 비장애를 함께 경험한다고 구성된 교육콘텐츠는 두 범주로 갈라놓은 기존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는 다른 접근이 될 수 있다.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없게 함으로써 수많은 선택지가 존재하는 퍼지이론(fuzzy set)처럼 장애를 수직적 다름이 아닌 수평적 다름으로 이해한다. 곧, 장애와 비장애가 장애로부터 시작하며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점으로 시작하며 그 연속선상에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6) 기여 및 장애 자부심

다양성에 앞서 인간존재가치의 관점에서 장애인식개선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존의 역할로서의 장애(인)는 그 자체로 기여하고 있음이다. 장애 자부심은 사회의 유무형을 막론하고 기여할 때 생기는 것이므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며 찾아내는 것이 장애학의 실천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을 드러내며 동시에 장애인도 도구화시키지 않는 콘텐츠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제언

Susan Baglieri · Priya Lalvani(2023)는 퇴색되어가는 장애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장애를 “놀라운” 장치로 사용하는 자료의 의도적 이용을 주장한다. 이어서 그들은 장애와 장애인의 삶에 관한 어떤 가정과 잘못된 인식들에 관한 지속적 탐구를 주장하고 있다. 그 지속적 탐구의 핵심은 ‘생각·태도·이해·사회적 실제 사이의 연관성’이라고 한다. 이해와 실재는 사회적 행동, 속도, 독립성, 지적능력과 관련된 특정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에 따라 많은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장애와 장애인의 삶에 관한 가정과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 실제 새롭게 제안된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이 장애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상호교환적 관계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1)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과정과 교육 의식에서 장애가 누락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학교에서 반편견교육과정(anti-bias curricula) 교육을 통해 불의에 맞서고 사회의 다양한 “주의” (isms)를 해체한다(박승희 외, 2023). 장애체험교육은 장애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개선교육의 도구로서 재현되며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당사자인 강사나 발표자가 우선 되어지거나 자문단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자료(책, 사이트, 매체 등)에서 장애인의 목소리와 시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설명하거나 자료로부터 얻은 메시지를 함께 토론한다. 먼저, 장애 예술과 문화의 자료들을 선정하며 교육참여자에게 경험하게 하며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참여형 교육의 형태로 구성한다.

다음, 미디어와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방법으로 접근한다. 장애 관련한 텍스트를 재구성하며 다양한 질문하기(장애인의 삶에 어떤점이 흥미로운가, 중요한 관점과 사건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장애와 관련한 불의를 인식하고, 듣고 저항하고, 행동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나, 현재 사람들이 불의에 저항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박승희 외, 2023). 최근 한 드라마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이슈가 되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특정한 시간에만 주어진 교육보다 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콘텐츠에 장애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어지는 미디어의 활용과 더불어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교육 방법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같

이 일방적인 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장애를 사회변화의 주체로 위치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내용으로 소통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

장애는 여러 맥락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지고 있다. 이에 일상 속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실천의 예들이 있다(박승희 외 역, 2023). 장애문화는 장애나 장애인을 창작물의 중심에 두는 모든 분야의 예술가를 개념한다. 이러한 장애 정체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의 접근은 장애를 넘어서는 주제와 인간 상태, 반문화적 운동에 대한 이해를 촉발하며, 장애를 가진 삶의 넓은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다.¹¹⁾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장애인들의 작품을 듣거나 보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강사와 참여자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1) 음악: 청각장애인이며 미국 수어를 사용하는 모세는 반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에 참석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향악단의 음악가들을 만나게 된다.

예2) 그림: 저자는 자신의 자폐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자신의 사고방식이 동물과 학과 가축을 다루는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을 가능케 했는지 강조하며 유년기와 성인기의 자신의 인생여정을 그림으로 묘사한다.

(2) 다양한 콘텐츠로의 장애재현을 포함한 교육

장애인들은 미디어, 문학, 대중문화 등에 많이 재현되지 않는다. 그들이 재현되는 방식은 기존의 고정관념 방식으로 혐오와 배제의 존재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부정적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자연스러운 존재로서 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미디어와 언론에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정부 부처간 협력, 미디어 콘텐츠 개발자 발굴 등의 노력과 함께 이를 공유할 플랫폼이 개발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법제도 개선 방향

법제도와 그 실행에 기대는 것의 우려하는 바는 장애의 모든 문제를 개인 환원

11) www.fvkasa.org/resources/files/history-culture.php등에서는 장애 문화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으며, www.disailitartsinternational.org/등에서는 모든 유형의 장애 예술가와 단체들을 참고.

적으로 축소하며 그 상황 자체를 개인 대 개인으로 전가하는 사회정치적 구태를 수 없이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ICF와 미국의 재활법 ADA를 준거하며 한국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장애의 의학적 접근이 아닌 사회정치적 접근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장애의 상호작용적 정의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2001년 '장애'를 손상, 활동 제한, 참여제약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WHO에 의해 채택된 ICF와 사회의 태도상, 환경적 장벽이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에 완전 참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강조하며 그 태도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필수로 여기는 유엔의 CRPD 등에서 보이는 장애인의 정의는 사회정치적 접근법의 예라 볼 수 있다(조한진 외,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 대상에 대한 차이로 교육 내용 또한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 대상은 사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이며,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 대상은 보육·교육 기관 및 공공단체의 소속 학생 및 직원이다. 이 때, 「장애인복지법」상 교육 대상으로 규정되는 기관의 직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교육 대상이기도 하다. 현장에서는 교육 목표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비슷한 내용의 의무교육을 중복해서 받는다고 착각하여 피로감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두 법령의 근거에 따른 교육의 목적은 서로 상이하나, 교육 내용에서 존엄성, 다양성, 보편성 등의 개념과 함께 통합사회로의 지향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이 최소 2시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교육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기관 및 피교육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 시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실제 교육에 모두 포함되기 위해서는 최소 2시간의 시간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연 1회, 1시간 이상”을 ‘연 1회, 2시간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2항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1년에 1회 및 2시간 이상 실시하는’으로 개정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단계별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교육 참여자의 장애 이해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법령에 근거한 교육 내용은 난이도

조절에 따라 구분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내용을 생애주기별, 이해 수준별, 교육 이행 횟수 및 단계 등을 구분한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단계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위치시킬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3) 가이드라인의 활용

본 연구는 다양성에 앞서 인간존재 가치의 기본에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식개선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의 역할로서 기존 장애인식개선교육내용에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개인적 관념론적 입장을 사회적 관념론으로 수정하고, 비장애중심주의 즉, 능력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모델에 바탕을 두는 장애학 관점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원칙들이 포함된 매뉴얼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가이드라인을 최대가 아닌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석주, 2008,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선진, 2004, “장애인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 58-75.
- 김동일 · 이은경 · 김희주 · 이연재 · 장혜명 · 황지영, 2018, 『장애인인식개선교육중 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병하, 2015, “장애학과 한국특수교육론-한국장애학회의 창립에 즈음하여”, 『이론과 실천』, 16(2): 647-660.
- 김성애, 2014, “우리나라 장애이해 교육의 의미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14(2): 53-73.
- 김수연, 2017, “동화에 나타난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에 대한 인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7(13): 561-582.
- 김용탁 · 김정연 · 고인철, 2016,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김유리, 2012,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 초등학생의 장애인식과 활동선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아 · 김수연, 2006, “장애이해교육 내용을 삽입한 교과 수업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9(2): 173-192.
- 김종두, 2023, “게임문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에듀테인먼트 연구』, 5(2): 35-48.
- 김주호, 2015, “그림검사를 활용한 초등 고학년의 장애인식 특성 분석: 통합교육 및 장애인 친인척의 유무를 중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홍원 · 최권택, 2022, “메타버스를 활용한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 필요성에 대한 탐구”,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2022(12): 863-866.
- 김태연 · 고진호, 2021,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다누리 배움터’의 유아용 다문화인식개선 콘텐츠 분석”, 『인문사회 21』, 12(5): 1311-1320.
- 권원영, 1998, “특별한 친구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아라, 2023,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방향 고찰”,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5(1): 153-173.
- 박미혜, 2008, “학급차원의 또래 지원망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과의 친구관 계와 장애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7(1): 51-71.
- 박승희, 2004, “장애개념화의 진전이 장애인 지원 구축에 지니는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38(4): 27-65.
- 박승희 · 양여경 · 이현주, 2022, “직장인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지표 개발: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구체적 기준”, 『한국장애인복지학』, 56: 299-332.
- 박승희 · 이효정 · 한경인 · 이성아 · 양여경 역, 2023, 『비장애중심주의 넘어 _장애학 기반 장애이해교육』, Susan Baglieri · Priya Lalvani., 2019, Undoing Ableism: Teaching About Disability in K-12 Classrooms (Teaching about Disability in K-12 Classrooms), 서울: 피치마켓.
- 백영은 · 유은주, 2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변용찬 · 임성은 · 이익섭 · 조형석, 2007,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훈성, 2014, “장애인스포츠 활동이 비장애 고등학생의 장애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기, 2014, “마르텐 부버의 ‘만남’의 철학에 기반한 장애이해교육의 재구성”, 『지적장애연구』, 16(2): 107-133.
- 이대식 · 김수연, 2013, “장애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교육논총』, 33(1): 113-136.
- 이동석 · 이하림 · 이유림, 2016,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 Patrick J. Devlieger · Frank R. Rusch · David Pfeiffer., 2003, Rethinking Disability, 서울: 그린비.
- 이동석 · 이호선 · 박광옥 · 윤삼호 · 우미정, 2019,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동석 · 이호선 · 박광옥 · 장영재 · 우미정, 2019,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방안 및 향후 과제 연구』. 보건복지부.
- 이상애 · 김성애, 2004, “장애이해 교육활동을 통한 일반유아의 장애 인식 및 태도 변화”, 『유아특수교육연구』, 4(2), 113-136.

- 이종정, 2018, “장애모델의 발전사를 통해 살펴 본 긍정적 장애모델의 특성과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41(41): 165-194.
- 이창화, 2008, “장애인식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 · 최승철 · 서원선 · 김예원 · 조연길 · 최혜영 · 이선화 · 서옥영, 2017,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양세희, 202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장애개념을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 2008, “이론적 탐구분야로서의 유아교육과정 이해(II)”,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425-440.
- 임동진 · 강정향 · 송민혜 · 유민이 · 박관태, 2020,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3(1): 1-26.
- 우충완, 2015, “수직적 역지사지, 수평적 동병상련: 비장애체험활동에 관한 질적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4): 23-45.
- 유두한 · 김선진 · 김도연 · 김민지 · 우성경, 2023, “국내 치매인식 개선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지』, 5(1): 19-33.
- 유득규, 2023,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등교육 모델”, 『한국과 국제사회』, 7(1): 25-52.
- 장소정 · 박진서 · 장연지 · 문정민, 2023, “자원재생활동가의 복지와 인식개선을 위한 업사이클링 공간 조성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5(1):257-258.
- 장세철 · 유애란 · 조문기(2020), “치매인식개선에 관한 연구 -치매용어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74: 239-256.
- 김건희, 2017, “장애학과 자폐성 장애 학생 교육”, 한국장애학회(편), 『장애이슈, 장애학으로 읽기』, pp. 54-56. 서울: 리드릭.
- 정영인, 2023, “멀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문화와 융합』, 45(6): 673-681.
- 정정희, 2020, “비장애인 동료근로자의 장애인식 변화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한진, 2011,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이론과 실천, 12(4): 1-25.
- 조한진 · 손홍일 · 이지수 · 정지웅 · 강민희 · 최복천 역, 2019, 『장애 이론 : 장애 정체성의 이론화』, Siebers, T., 2008, Disability Theory, 서울: 학지사.
- 최병민, 2005, “초등학교 도덕과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장애이해교육 내용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민규 · 황미라, 2007,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일반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재활복지』, 11(2): 26-43.
- 황주희 · 김성희 · 노승현 · 강민희 · 정희경 · 이주연 · 이민경, 2014,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erger, R. J., 2013, “Introducing disability studies. Denver”, CO: Lynn Rienner Publishers.
- Campbell, F., 2001, “Inciting legal fictions: Disability’s date with ontology and the ableist body of the law”, Griffith saw Review, 10(1), 42.
- Campbell, F., 2009, “Contours of ableism: The production of disability and ablednes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Davis, L. J., 2002, “Bending over backward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Garland-Thomson, R., 1997, “Extraordinary bodies: Figuring physical disability in American culture and literatur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 Linton, Simi, 1998, “Claiming disability: Knowledge and ident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iebers, T., 2008, Disability theo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mart, J., 2000, “Disability, society, and the Individual”, MD: Aspen Publisher.
- Woo, C., 2012, “ ‘Seeing another/seeing oneself’ :Nondisabled audiences’ perspectives on disability in two South Korean films, ‘OASIS’ (2002) and ‘MALATON’ (200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UN, 2020, The Human Rights Indicators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https://www.greenbee.co.kr/67> / 편집자 추천글